

20  
26

# 개정 세법

이철재  
정정운  
이승철  
유은종  
정우승  
박지섭





## 일러두기

1. 이 자료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를 위한 자료입니다. 2025년 12월에 개정된 세법 법률의 내용과 2026년 1월에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수험 목적과 관련 있는 2026년 시행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6년 1월에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된 내용을 기초로 제작된 자료**입니다. 추후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경우 입법예고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추후 공포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2026년에 출간되는 교재 등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목적에 필요한 내용만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목에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6년에 출간되는 세법학 교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의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자료는 편저자들의 독창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재정경제부에서 이미 발표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편저자들이 수험 목적에 맞게 편집·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 재정경제부, "2025년 세법개정안", 2025.7.31.
  - 재정경제부,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6.1.16.



## 차례

제1부 법인세법 .....	1
제1장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3
제2장 과세표준과 세액	10
제3장 그 밖의 법인세	13
제4장 그 밖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개정사항	26
제2부 소득세법 .....	51
제1장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53
제2장 양도소득세	95
제3부 부가가치세법 .....	111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19
제5부 국세기본법 .....	133
제6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국세징수법 .....	141
제1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43
제2장 국세징수법	153



제1부

법인세법



1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조특법 §136

종전	개정
<p>□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p> <p>○ (추가 손금산입 한도)</p> <p>① 문화비 지출분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p> <p>② 전통시장 지출분*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10%</p> <p>* 일반유희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 업종 지출액은 제외</p> <p>○ (적용기한) '25.12.31.</p>	<p>□ 특례대상·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p> <p>○ (좌 동)</p> <p>① (좌 동)</p> <p>②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p> <p>* 일반유희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p> <p>□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현금구입증명자료 : 지역사랑상 품권 판매대행점이 발행한 것으로서 명칭을 불문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구입을 입증하는 자료*</p> <p>* 영수증, 입금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등</p> <p>○ '28.12.31.</p>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법인법 §24③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 손금산입한도</li> <li>○ (특례기부금) 소득금액 × 50%</li> <li>○ (일반기부금) (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10%</li> <li style="padding-left: 20px;">- 사회적기업의 경우 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li>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style="padding-left: 20px;">- 20% → 30%</li> </ul>

<개정이유>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3 기부시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추가 법인령 §39①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시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등</li> <li>○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li> <li>○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li> <li>○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추가</li> <li style="padding-left: 20px;">○ (좌 동)</li> <li>○ 「아동복지법」에 따른 <b>다함께돌봄센터</b></li> <li>○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b>가족센터</b></li> <li>○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b>갱생보호 시설</b></li> </ul>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4 공익법인 범위에서 외국 종교단체 제외 법인령 §39①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법인 소속 단체 포함</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종교단체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법인 소속 국내 소재 단체로 한정</li> </ul> </li> </ul> </li> </ul>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5 광업권 등에 대한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내용 명확화 법인령 §26②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가상각액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무형고정자산 : 정액법</li> <li>○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 : 정률법 또는 정액법</li> <li>○ 광업권·폐기물매립시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량비례법 :   <math display="block">\text{취득가액} \times \frac{\text{당기 채굴량}}{\text{총채굴예정량}}</math> </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가액·채굴예정량 변동시 생산량비례법 내용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량비례법 :   <math display="block">\text{미상각잔액}^* \times \frac{\text{당기 채굴량}}{\text{잔여채굴예정량}^{**}}</ma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취득가액 - 누적상각액 + 증가한 취득가액</li> <li>** 당초 채굴예정량(증감 포함) - 누적채굴량</li> </ul> </li> </ul> </li> </ul> </li> </ul>

<개정이유> 감가상각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6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28의5, 조특령 §25의5 신설

종전	개정
<p>〈신설〉</p>	<p>□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li> </ul> </li> <li>○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인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li> </ul> </li> <li>○ (적용기한) '28.12.31.</li> </ul>

〈개정이유〉 중소기업 스마트혁신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 분부터 적용

## 7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법인령 §68①, 소득령 §48

현행	개정안
<p>□ 자산 판매손익 등의 귀속 사업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제품 등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기간 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약 등에 의해 그 판매 확정되는 경우 : 그 기간 만료일</li> </ul> </li> </ul>	<p>□ 조건부·기한부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 등을 조건부·기한부 판매한 경우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li> </ul> <p>○ (좌 동)</p>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및 법체계 일관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 8 보험회사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방법 변경 허용 법인령 §75④·⑤

현행	개정안
<p>□ 유가증권 등의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등, 채권 :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선택</li> <li>○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등 : 시가법</li> <li>○ 변액보험 특별계정내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시가법 중 선택</li> <li>- 선택한 방식은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 평가방법 보완</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p>■ 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간 합병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방법 변경* 허용</p> <p>*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p>

<개정이유> 유가증권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방법 변경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9 가상자산 평가방식 합리화 법인령 §77

현행	개정안
<p>□ 가상자산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입선출법</li> </ul>	<p>□ 평가방법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평균법</li> </ul>

<개정이유> 가상자산 소득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0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법인령 §19의2

현행	개정안
<p>□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li> <li>○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li> <li>○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li> <li>○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협의회 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li> <li>○ 건설회사·전기 통신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채무보증</li> <li>○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 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추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p>○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b>핵심자원</b> 및 그 <b>핵심자원의 소재·부품 생산</b>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p>

<개정이유> 자원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사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 11 부당행위계산 부인 완화 적용 법인령 §88①

현행	개정안
<p>□ 부당행위계산 유형 중 금전·자산·용역을 무상·저가로 대부·제공한 행위 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른 금전 지급</li> <li>○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 제공</li> <li>○ 연결법인 간 연결법인세액 변동 없는 용역 제공</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제외 대상 추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p>○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무상·저가 임대</p>

〈개정이유〉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및 장애인 사업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1 법인세율 환원 법인법 §55①

종전	개정																																				
<p>□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p> <p>○ (일반법인)</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 표</th> <th>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0~2억원</td> <td>9%</td> </tr> <tr> <td>2~200억원</td> <td>19%</td> </tr> <tr> <td>200~3,000억원</td> <td>21%</td> </tr> <tr> <td>3,000억원 초과</td> <td>24%</td> </tr> </tbody> </table> <p>○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 표</th> <th>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200억원 이하</td> <td>19%</td> </tr> <tr> <td>200~3,000억원</td> <td>21%</td> </tr> <tr> <td>3,000억원 초과</td> <td>24%</td> </tr> </tbody> </table>	과 표	세 율	0~2억원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p>□ 법인세율 상향 조정</p> <p>○ (좌 동)</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 표</th> <th>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0~2억원</td> <td>10%</td> </tr> <tr> <td>2~200억원</td> <td>20%</td> </tr> <tr> <td>200~3,000억원</td> <td>22%</td> </tr> <tr> <td>3,000억원 초과</td> <td>25%</td> </tr> </tbody> </table> <p>○ (좌 동)</p> <table border="1"> <thead> <tr> <th>과 표</th> <th>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200억원 이하</td> <td>20%</td> </tr> <tr> <td>200~3,000억원</td> <td>22%</td> </tr> <tr> <td>3,000억원 초과</td> <td>25%</td> </tr> </tbody> </table>	과 표	세 율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 표	세 율																																				
0~2억원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과 표	세 율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개정이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법인법 §15②·§57의2①·②·③

종전	개정
<p>□ 익금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li> <li>○ 익금으로 보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관계인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유가증권 매입 시 시가와 매입가 차액 상당액 등</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법인세 신고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과세표준 한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li> <li>○ (공제한도금액) <math>A \times B / C</ma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 산출세액</li> <li>- B :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에 한정</li> <li>- C : 과세표준</li> </ul> </li> <li>○ (이월공제) 공제한도금액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적용</li> </ul>	<p>□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sup>㉑</sup></li> </ul> <p>□ 공제한도금액 계산 방식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B :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 ㉑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 여부와 무관</li> <li>- (좌 동)</li> </ul> </li> <li>*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의 범위에 포함함에 따라 A, C에도 ㉑가 반영되는 결과</li> <li>○ (좌 동)</li> </ul>

<개정이유>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3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조특령 §104의5

현행	개정안																				
<p>□ 전자신고 세액공제</p> <p>○ (대상) 전자신고의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p> <p>* 납세자, 세무대리인·세무법인 등</p> <p>○ 세액공제 기준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득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b>2만원</b></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가 납부·환급세액과 <b>1만원</b> 중 적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법인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b>2만원</b></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가가치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b>1만원</b></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양도소득세(예정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2만원</td> </tr> </table>	소득세	<b>2만원</b>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b>1만원</b> 중 적은 금액	법인세	<b>2만원</b>	부가가치세	<b>1만원</b>	양도소득세(예정신고)	2만원	<p>□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p> <p>○ (좌 동)</p> <p>○ 세액공제 기준금액 인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득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b>1만원</b></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가 납부·환급세액과 <b>5천원</b> 중 적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법인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b>1만원</b></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가가치세</td> <td style="text-align: center;"><b>5천원</b></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양도소득세(예정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좌 동)</td> </tr> </table>	소득세	<b>1만원</b>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b>5천원</b> 중 적은 금액	법인세	<b>1만원</b>	부가가치세	<b>5천원</b>	양도소득세(예정신고)	(좌 동)
소득세	<b>2만원</b>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b>1만원</b> 중 적은 금액																				
법인세	<b>2만원</b>																				
부가가치세	<b>1만원</b>																				
양도소득세(예정신고)	2만원																				
소득세	<b>1만원</b>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b>5천원</b> 중 적은 금액																				
법인세	<b>1만원</b>																				
부가가치세	<b>5천원</b>																				
양도소득세(예정신고)	(좌 동)																				

<개정이유> 전자신고 정착에 따른 지원 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연결납세 관련 개정사항

(1) 연결납세 적용제외 법인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추가 법인령 §120의12①·②

현행	개정안
<p>□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외 법인</p> <p>○ (모·자법인 제외)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유동화 전문회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 톤세제 적용법인</p>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모법인 제외) 비영리법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p>	<p>□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추가</p> <p>○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소규모 법인*</p> <p style="text-align: center;">* 「법인세법」 §60의2①(1)에 해당하며,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내국법인</p> <p>○ (좌 동)</p>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 법인법 §76의19·§76의21

종전	개정
<p>□ 연결법인의 가산세</p> <p>○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가산세 항목 추가</p> <p>○ (좌 동)</p> <p>○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p>

〈개정이유〉 연결법인 가산세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연결납세 취소·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정비 법인법 §76의9·§76의12

종전	개정
<p>□ 연결납세방식 취소·배제시 결손금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한) 승인 후 5년 이내 취소·배제시</li> <li>○ (공제받은 법인) 기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익금산입  <div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div> </li> <li>○ (결손 법인)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손금산입  <div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div> </li> </ul>	<p>□ 결손금 사후관리 예외 규정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익금산입 제외</li> <li>○ (좌 동)</li> <li>-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손금산입 제외</li> </ul>

<개정이유> 연결납세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취소·배제되는 분부터 적용

## 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개정사항

(1)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조특칙 §45의10

종전	개정																														
<p>□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p> <p>○ (과세방식) 미환류소득* × 20%</p> <p style="margin-left: 20px;">*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환류대상</p> <p>○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p> <p style="margin-left: 20px;">*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가산 - 법인세액 등 차감</p> <p style="margin-left: 20px;">- (투자포함형) 기업소득 × 70%*</p> <p style="margin-left: 40px;">* 60~80% 내에서 시행령으로 위임</p> <p style="margin-left: 20px;">- (투자제외형) 기업소득 × 15%*</p> <p style="margin-left: 40px;">* 10~20% 내에서 시행령으로 위임</p> <p>○ (환류대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항목</th> <th>가중치</th> </tr> </thead> <tbody> <tr> <td>투자</td> <td>1</td> </tr> <tr> <td>임금증가(① + ② + ③)</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td> <td>1~2</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②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td> <td>1</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③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td> <td>1</td> </tr> <tr> <td>상생협력 지출액</td> <td>3</td> </tr> </tbody> </table> <p>○ (적용기한) '25.12.31.</p>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① + ② + ③)		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1~2	②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1	③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1	상생협력 지출액	3	<p>□ 제도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p> <p>○ (좌 동)</p> <p>○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p> <p style="margin-left: 20px;">- 65~85% 내에서 시행령으로 위임(80% 예정)</p> <p style="margin-left: 20px;">- 20~40% 내에서 시행령으로 위임(30% 예정)</p> <p>○ 환류대상에 배당 추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항목</th> <th>가중치</th> </tr> </thead> <tbody> <tr> <td>투자</td> <td>1</td> </tr> <tr> <td>임금증가(① + ② + ③)</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td> <td>1~2</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②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td> <td>1</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③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td> <td>1</td> </tr> <tr> <td>상생협력 지출액</td> <td>3</td> </tr> <tr> <td>배당*</td> <td>1</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left: 20px;">*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현금배당 : 직전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결산배당) 등</p> <p style="margin-left: 20px;">-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 감액배당은 제외</p> <p>○ '28.12.31.</p>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① + ② + ③)		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1~2	②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1	③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1	상생협력 지출액	3	배당*	1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① + ② + ③)																															
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1~2																														
②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1																														
③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1																														
상생협력 지출액	3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① + ② + ③)																															
①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1~2																														
②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1																														
③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1																														
상생협력 지출액	3																														
배당*	1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기업소득 가산항목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및 의무적립금 환입액 추가 조특령 §100의32④

현행	개정안
<p>□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계산 방법</p> <p>○ (기업소득)</p> <p style="padding-left: 20px;">각 사업연도소득 + 가산항목 - 차감항목</p> <p style="padding-left: 40px;">- (가산항목)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액 등</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span style="font-size: 2em;">[</span> </div>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style="padding-left: 40px;">- (차감항목) 이월결손금, <b>법령상 의무적립금*</b> 등</p> <p style="padding-left: 60px;">* 금융회사 대손충당금, 보험사 손실보전준비금 등</p>	<p>□ 기업소득 산정시 가산항목 추가</p> <p>○ (좌 동)</p> <p style="padding-left: 40px;">-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li> <li>■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27년부터 적용)</li> <li>■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액</li> </ul> <p style="padding-left: 40px;">- (좌 동)</p>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2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환류대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제외 명확화 조특령 §100의32④

현행	개정안
<p>□ 미환류소득 산정 시 차감하는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증가액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외되는 상시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 특수관계자 등</li> <li>- <u>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u> 상시근로자</li> </ul> </li> <li>○ 근로소득 증가액 계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업연도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u>근로소득</u>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li> </ul> </li> </ul>	<p>□ 근로소득 계산기준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근로소득 계산시 비과세소득 제외</li> </ul> </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근로소득 계산시 비과세소득 제외</li> </ul> </li> </ul>

<개정이유> 환류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4)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환류대상에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추가 조특령 §100의32⑥

현행	개정안
<p>□ 미환류소득 산정시 차감되는 상생협력 지출액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 목적 한정)</li> <li>○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li> <li>○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li> <li>○ 금융회사가 신·기보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금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가&gt;</p>	<p>□ 상생협력 지출액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지원 목적 한정)</li> </ul>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등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 3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 법인법 §16②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대가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법인의 주식</li> <li>-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주식</li> </ul> </li> <li>○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완전모회사인 법인의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 주식 포함</li> </ul> </li> <li>○ (좌 동)</li> </ul> </li> </ul>

<개정이유>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

### 4 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적용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합리화 법인령 §92의2②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리츠*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 추 가과세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상환·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li> <li>○ (적용대상) 비수도권 미분양주택</li> <li>○ (적용기간) '25.1.1. ~ '25.12.31. 취득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간 연장 및 대상 주택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li> <li>○ ~ '26.12.31. 취득분</li> </ul> </li> </ul>

<개정이유> 미분양주택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이전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5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추가** 법인령 §3①

현행	개정안
<p>□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 자활센터</li> <li>○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의 범위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b>장애인 활동지원기관</b></li> <li>○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b>가족센터</b></li> </ul>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의 공익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4

종전	개정
<p>□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의료기술협력단,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지방소재 비영리의료기관 등</li> <li>○ (손금한도) 수익사업소득 금액의 100%</li> <li>○ (적용기한) '25.12.31.</li> </ul>	<p>□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8.12.31.</li> </ul>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 7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및 세액공제 시행시기 유예

(1)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법률 제19196호 소득법 §81의11·부칙, 법률 19193호 법인법 §75의7·부칙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근로소득 : 매월</li> <li>○ 시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1.1. 이후</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시기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시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1.1. 이후</li> </ul> </li> </ul> </li> </ul>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2)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법률 제19199호 조특법 §104의5·부칙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li> <li>○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당 200원</li> <li>○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li> <li>○ (적용기간) '26.1.1. ~ '27.12.31.</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간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7.1.1. ~ '28.12.31.</li> </ul> </li> </ul>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 8 수시부와 결정시 계산 제외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추가 법인령 §108②

현행	개정안
<p>□ 수시부와결정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방법</p> <p>○ 「법인세법」 제55조제2항 등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하되 아래 가산세는 적용 제외</p> <p>-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제외되는 가산세 추가</p> <p>○ (좌 동)</p> <p>-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p>

<개정이유> 수시부와 결정시 과세표준 계산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9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조특법 §72

종전	개정
<p>□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p> <p>○ (대상)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p> <p>○ (적용세율)</p> <p>- 과표 20억원 이하 : 9%</p> <p>- 과표 20억원 초과분 : 12%</p> <p>○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p> <p>*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과다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p> <p>○ (적용기한) '25.12.31.</p>	<p>□ 세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p> <p>○ (좌 동)</p> <p>○ (적용세율)</p> <p>- (좌 동)</p> <p>- 12 → 15%</p> <p>○ (좌 동)</p> <p>○ '28.12.31.</p>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내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개선 법인령 §111⑧

종전	개정
<p>□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p> <p>○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국채등 : 한국예탁결제원</p> <p>○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국채등 : 예탁자</p>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추가</p> <p>○ (좌 동)</p> <p>○ (좌 동)</p> <p>○ 예탁자인 국제예탁결제기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등 : 내국법인</p> <p style="font-size: small;">*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p>

〈개정이유〉 국채등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5.11.28.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11 외국법인 관련 개정사항

### (1)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법인법 §94의2·§124, 법인령 별표2

종전	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 거래처 현황 등</li> <li>○ 미제출·거짓제출시 최대 1,000만원*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으로 위임</li> </ul> </li> </ul> </li> <li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시행령 신설 예정] 현황명세서 미제출·거짓제출 시정명령 위반 : 500만원</li> </ul>

<개정이유> 자료제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분부터 적용

### (2)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 소득법 §156의6, 법인법 §98의6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신청서등*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지구 신고서</li> <li>○ (보관기간) 원천징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일(원천징수일) 다음달 10일</li> </ul> </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li> <li>*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동일</li> </ul> </li> </ul>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제한세율 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

(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 법인법 §93

종전	개정
<p>□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자산·사업과 관련되거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보상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당첨금품, 상금, 포상금 등</li> <li>○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li> <li>○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li> <li>○ 특수관계인 보유 내국법인 주식의 부당행위 거래로 인한 가치증가분</li> <li>○ 가상자산소득</li> </ul>	<p>□ 증여의 범위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b>현저히 낮은 대가</b>를 지급하고 <b>이전</b>받는 경우로서 <b>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포함</b></li> <li>○ (좌 동)</li> </ul>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 법인법 §93

종전	개정
<p>□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상 배당소득</li> <li>○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li> <li>* ❶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은 금액</li> <li>      ❷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가&gt;</p>	<p>□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에 <b>장외파생상품 배당상당액 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b>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b></li> </ul>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 개선 법인령 §129의3④ 신설

현행	개정안
<p>□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 적용</p> <p>○ (대상) 외국은행 국내지점</p> <p>○ (요건) 국내지점 자본금 - 자본금 추산액* &lt; 0                      * 본점의 자기자본금 비중까지 고려한 적정 자본금 수준 :                      ①, ② 중 선택                      ① (국내지점 총자산액) × (외국법인 본·지점 전체 자기자본금/총자산액)                      ② (국내지점 위험가중자산) × (외국법인 본·지점 전체의 자기자본금/위험가중자산)</p> <p>○ (내용) 자본금 미달액(자본금 추산액 - 자본금)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p> <p>-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 시 큰 금액 적용</p> <p>*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액의 2배(금융업 6배) 초과시 초과분 이자비용 손금불산입</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과소자본 지급이자 없는 경우 간주자본세제 적용 배제</p> <p>○ (좌 동)</p> <p>-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6배 이하인 경우 간주자본세제 미적용</p>

<개정이유> 간주자본세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21

종전	개정
<p>□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 비과세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자체·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수수료 등</li> <li>○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한 국가·지자체·내국법인 발행 외화증권 등 양도소득</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비과세 소득에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 투자소득 추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결제은행(BIS)의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방법) ① 또는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직접투자) 국내 보관 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li> <li>② (간접투자) 적격외국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li> </ul> </li> </ul> </li> </ul> <p style="margin-left: 20px;">*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절차)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li> </ul>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의 원화자산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1)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13·§13의2

종전	개정
<p>□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창업·벤처기업 주식 등 양도차익 및 배당 소득 비과세</li> <li>○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직·간접 출자분</li> <li>②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li> <li>○ (적용기한) '25.12.31.</li> </ul> <p>□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창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5% 세액공제</li> <li>○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직·간접 출자분</li> <li>②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li> <li>○ (적용기한) '25.12.31.</li> </ul>	<p>□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li>③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li> </ul> </li> <li>○ '28.12.31.</li> </ul> <p>□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③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li> <li>○ '28.12.31.</li> </ul>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법인법 §51의2

종전	개정
<p>□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배당금액 소득공제</li> <li>○ (중복배제) 배당받은 주주 등의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으로서 동업자들에게 소득·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가&gt;</p>	<p>□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li> </ul> </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li> </ul> </li> </ul>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14

종전	개정
<p>&lt;신설&gt;</p>	<p>□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 대상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적격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과 동일</li> </ul> </li> <li>- SP가 취득한 내국법인 채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li> </ul> </li> <li>○ (내용) 특례 대상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의 SP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li> <li>○ (적용기한) '28.12.31.</li> </ul>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3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3의2

종전	개정
<p>□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への 출자 세액공제</p> <p>○ (세액공제율)</p> <p>① 직·간접* 출자 : 주식 등 취득가액의 5% *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p> <p>②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 출자금액*의 5% + 주식 등 취득가액 증가분의 3% * Max(벤처기업 주식 등 취득가액,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액의 60%)</p> <p>○ (적용기한) '25.12.31.</p>	<p>□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p> <p>○ (세액공제율)</p> <p>① (좌 동)</p> <p>②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5%</p> <p>○ '28.12.31.</p>

<개정이유>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31

종전	개정
<p>□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p> <p>○ (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 <p>*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 :</p> <p>①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등 상당한 시간·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에 운용</p> <p>② 본점 외 영업소나 직원·상근임원을 두지 않을 것</p> <p>③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등</p> <p>○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b>90% 이상</b>을 배당</p> <p>○ (제외)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해 그 배당에 대한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등</p> <p>○ (적용기한) '25.12.31.</p>	<p>□ 적용기한 연장</p> <p>○ (좌 동)</p> <p>○ '28.12.31.</p>

<개정이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5** 소재·부품·장비 관련 과세특례 제도 정비 조특법 §13의3·§13의4

종전	개정
<p>□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출자·인수에 대한 세액공제</p> <p>○ (공제율)</p> <p>①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출자 : 주식 등 취득가액의 5%</p> <p>② 소부장 관련 외국기업 인수 : 인수금액의 5% (중견 7, 중소 10%)</p> <p>○ (적용기한) '25.12.31.</p> <p>□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p> <p>*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p> <p>**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p> <p>○ (내용)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 주식 등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p> <p>○ (요건) 직·간접 출자</p> <p>○ (적용기한) '25.12.31.</p>	<p>□ 적용기한 정비</p> <p>○ ① 출자 적용기한 종료</p> <p>② 인수 '28.12.31.</p> <p>□ 적용기한 종료</p>

<개정이유> 소부장 관련 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

##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

종전	개정
<p>□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율) 소재지·기업규모·업종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 감면</li> <li>○ (한도) 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시 1명당 5백만원 차감</li> </ul> </li> <li>○ (적용기한) '25.12.31.</li> </ul>	<p>□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8.12.31.</li> </ul>

<개정이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 7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의4

종전	개정								
<p>□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p> <p>*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 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li> <li>○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li> <li>○ (공제율) 3단계 구조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지급기일</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 제 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일 이내 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0.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6~30일 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0.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1~60일 지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0.15%</td> </tr> </tbody> </table> </li> <li>○ (적용기한) '25.12.31.</li> </ul>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p>□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8.12.31.</li> </ul>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개정이유> 중소기업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 8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확대 조특법 §12의2③

종전	개정
<p>□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li> <li>○ (감면율) 3년 100%+2년 50%</li> <li>○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li> <li>○ (적용기한) '28.12.31.</li> </ul>	<p>□ 감면한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 (청년·서비스업·연구개발우수인력 2,000만원)</li> <li>○ (좌 동)</li> </ul>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시행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

## 9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24①

종전	개정																									
<p>□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비 한시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rowspan="2">공제율(%)</th> <th colspan="3">당기분</th> <th rowspan="2">증기분</th> </tr> <tr> <th>대</th> <th>중견</th> <th>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td> <td>1</td> <td>5 → 7</td> <td>10 → 12</td> <td rowspan="4">10</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3</td> <td>6 → 8</td> <td>12 → 14</td> </tr> <tr> <td>국가전략기술</td> <td>15</td> <td>15</td> <td>25</td> </tr> <tr> <td>↳ 반도체</td> <td>20</td> <td>20</td> <td>3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25.12.31.</li> </ul>	공제율(%)	당기분			증기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 7	10 → 12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 8	12 → 14	국가전략기술	15	15	25	↳ 반도체	20	20	30	<p>□ 적용기한 종료</p>
공제율(%)		당기분				증기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 7	10 → 12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 8	12 → 14																							
국가전략기술	15	15	25																							
↳ 반도체	20	20	30																							

<개정이유> 한시적 조세지원 종료

**10**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대상 기금 추가  
가 조특법 §8의3

종전	개정
<p>□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세액공제</p> <p>○ (공제대상 및 공제율)</p> <p>①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 10% *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p> <p>②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 장부가액의 3%</p> <p>③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 투자금액의 1/3/7%(대/중견/중소기업)</p> <p>④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 해당 자산 시가의 10%</p> <p>○ (적용기한) '25.12.31.</p>	<p>□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대상 기금 추가</p> <p>○ (좌 동)</p> <p>⑤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 (중소기업 보증·대출지원) 10% (중견기업 보증·대출지원) 5%</p> <p>○ '28.12.31.</p>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개정이유> '26.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11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25의8, 조특령 §22의12, 조특칙 §13의11 신설

종전	개정
<p>〈신설〉</p>	<p>□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콘텐츠)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에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li> <li>**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li> </ul> </li> <li>○ (대상자)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와 관련된 서비스제공자</li> </ul> </li> <li>○ (공제비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외비용) 정부 지원액, 홍보비 등 간접비용 등</li> </ul> </li> <li>○ (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li> <li>○ (공제율) 10%(중소 : 15%)</li> <li>○ (적용기한) '28.12.31.</li> </ul>

〈개정이유〉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 12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5의6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li> </ul> </li> <li>○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율) 10%(중소: 15%, 대: 5%)</li> <li>- (추가공제율*) 10%(중소: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 에 적용</li> </ul> </li> </ul> </li> <li>○ (적용기한) '25.12.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li> <li>○ 공제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공제율) 10%(중소: 15%)</li> <li>- (좌 동)</li> </ul> </li> <li>○ '28.12.31.</li> </ul>

<개정이유>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 13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5의7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li> <li>○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li> <li>○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li> <li>- (제외비용)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li> </ul> </li> <li>○ (공제율) 3%</li> <li>○ (적용기한) '25.12.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li> <li>○ 대기업 포함</li> <li>○ (좌 동)</li> <li>○ '28.12.31.</li> </ul>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4**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9의4

종전	개정
<p>□ 근로소득 증대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li> <li>○ (적용요건) ❶ &amp; ❷ 또는 ❷ &amp; 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gt;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li> <li>*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li> <li>❷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li> <li>❸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이 상승한 경우</li> </ul> </li> <li>○ (공제율)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중견 10%)</li> <li>○ (적용기한) '25.12.31.</li> </ul>	<p>□ 적용기한 연장</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8.12.31.</li> </ul>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 증대 지원

## 15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1)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종전		개정																																																																
<p>□ 통합고용세액공제</p> <p>○ (공제대상) 상시근로자* 증가분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p> <p>○ (공제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 적용</p> <table border="1" data-bbox="246 707 719 925">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4">1인당 공제액 (단위 : 만원)</th> </tr> <tr> <th colspan="2">중소(3년)</th> <th rowspan="2">중견(3년)</th> <th rowspan="2">대(2년)</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우대*</td> <td>1,450</td> <td>1,550</td> <td>800</td> <td>400</td> </tr> <tr> <td>기본</td> <td>850</td> <td>950</td> <td>450</td> <td>-</td> </tr> </tbody> </table> <p>*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p> <p>○ (사후관리) 공제 후 2~3년간 고용유지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li> <li>-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 배제</li> </ul> <p>○ (적용기한) '25.12.31.</p>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 : 만원)				중소(3년)		중견(3년)	대(2년)	수도권	지방	우대*	1,450	1,550	800	400	기본	850	950	450	-	<p>□ 공제액 개편, 사후관리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p> <p>○ 상시근로자* 증가분 *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p> <p>○ 상시근로자 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p> <table border="1" data-bbox="807 707 1280 1104">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4">1인당 공제액 (단위 : 만원)</th> </tr> <tr> <th colspan="2">중소(3년)</th> <th rowspan="2">중견(3년)</th> <th rowspan="2">대(2년)</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우대*</td> <td>1년차</td> <td>700</td> <td>1,000</td> <td>500</td> <td>300</td> </tr> <tr> <td>2년차</td> <td>1,600</td> <td>1,900</td> <td>900</td> <td>500</td> </tr> <tr> <td>3년차</td> <td>1,700</td> <td>2,000</td> <td>900</td> <td>-</td> </tr> <tr> <td rowspan="3">기본</td> <td>1년차</td> <td>400</td> <td>700</td> <td>300</td> <td rowspan="3">-</td> </tr> <tr> <td>2년차</td> <td>900</td> <td>1,200</td> <td>500</td> </tr> <tr> <td>3년차</td> <td>1,000</td> <td>1,300</td> <td>500</td> </tr> </tbody> </table> <p>*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p> <p>○ 고용 유지시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li> <li>-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하여 공제 배제</li> </ul> <p>○ '28.12.31.</p>		구분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 : 만원)				중소(3년)		중견(3년)	대(2년)	수도권	지방	우대*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기본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 : 만원)																																																																	
	중소(3년)		중견(3년)	대(2년)																																																														
	수도권	지방																																																																
우대*	1,450	1,550	800	400																																																														
기본	850	950	450	-																																																														
구분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 : 만원)																																																																
		중소(3년)		중견(3년)	대(2년)																																																													
		수도권	지방																																																															
우대*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기본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개정이유> 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중견·대기업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신설 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종전	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견·대기업 최소 증가 인원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견) 5명, (대기업) 10명</li> <li>○ 최소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li> </ul> </li> </ul>

〈개정이유〉 중견·대기업의 고용 증대 유인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4.12.31. 또는 '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3) 단시간 근로자 정의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 간소화 조특령 §26의8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 근로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li> <li>* <math>\frac{\text{해당 과세연도 총 근로시간}}{\text{해당 과세연도 근무 개월수}}</math></li> </ul> </li> </ul>

〈개정이유〉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상시근로자 계산 간소화 조특령 §26의8⑥

현행	개정안
<p>□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방법</p> <p>* 상시근로자, 청년등상시근로자 유형별 계산</p> <p>○ 해당 과세연도 매월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등 합계의 월평균</p> $\frac{\sum \text{매월말 상시근로자 등 수 (연간 합계)}}{\text{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p>-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 인용</p> <p>*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명, 상용형 시간제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p>	<p>□ 계산방법 간소화</p> <p>○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규정 준용</p> <p style="text-align: center;">상시근로자 등별</p> $\frac{\sum \text{해당 과세연도 근무개월 수}}{\text{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전체인원 합계)}}$ <p>▶ (상시근로자 등 수 계산)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명,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0.75명으로 계산</p> <p>▶ (근무개월 수 계산) 월말 현재 근무하는 경우 1개월 근무 간주</p>

<개정이유>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우대공제 적용시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 조특령 §26의8③

현행	개정안
<p>□ 청년 여부 판단 기준</p> <p>○ 해당 과세연도에 15~34세</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p> <p>○ (좌 동)</p> <p>- 해당 과세연도에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34세인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대기업은 3년간) 청년으로 간주</p>

<개정이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3.12.31. 또는 '24.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6)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9의8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li> <li>○ (대상) 중소·중견기업</li> <li>○ (요건) ❶ &amp; 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육아휴직자 복직</li> <li>❷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li> </ul> </li> <li>○ (공제금액)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li> <li>○ (적용횟수) 자녀 1인당 1회</li> <li>○ (사후관리) 육아휴직 복직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li> <li>○ (적용기한) '25.12.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연장</li> <li style="margin-left: 20px;">○ (좌 동)</li> <li style="margin-left: 20px;">○ '26.12.31.</li> </ul>

<개정이유> 육아휴직 복귀 지원

**16**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0

종전	개정
<p>□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li> <li style="margin-left: 20px;">*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5개 광역시(산업단지 제외)</li> <li>○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li> <li>○ (적용기한) '25.12.31.</li> </ul>	<p>□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8.12.31.</li> </ul>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17**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1

종전	개정
<p>□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li> <li>○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li> <li>○ (적용기한) '25.12.31.</li> </ul>	<p>□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8.12.31.</li> </ul>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18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조특법 §63·§63의2, 조특령 §60·§60의2

종전	개정																																				
<p>□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p> <p>○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 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가능</p> <p>○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낙후지역*1</th> <th>그 외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수도권*2</td> <td>5년 100% +2년 50%</td> <td>감면 없음</td> </tr> <tr> <td>수도권 연접지역*3</td> <td>5년 100% +2년 50%</td> <td>5년 100% +2년 50%</td> </tr> <tr> <td>지방광역시</td> <td>7년 100% +3년 50%</td> <td>5년 100% +2년 50%</td> </tr> <tr> <td>중규모도시*4</td> <td>7년 100% +3년 50%</td> <td>5년 100% +2년 50%</td> </tr> <tr> <td>그 외</td> <td>10년 100% +2년 50%</td> <td>7년 100% +3년 50%</td> </tr> </tbody> </table> <p>*1. 인구감소, 성장촉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홍천(내면 제외)·횡성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적용기한) '25.12.31.</p>		낙후지역*1	그 외 지역	수도권*2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3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4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p>□ 적용대상·감면기간 확대, 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p> <p>○ (좌 동)</p> <p>○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확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낙후지역</th> <th>그 외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수도권</td> <td>5년 100% +3년 50%</td> <td>감면 없음</td> </tr> <tr> <td>수도권 연접지역</td> <td>5년 100% +3년 50%</td> <td>5년 100% +3년 50%</td> </tr> <tr> <td>지방광역시</td> <td>7년 100% +4년 50%</td> <td>5년 100% +3년 50%</td> </tr> <tr> <td>중규모도시</td> <td>10년 100% +5년 50%</td> <td>5년 100% +3년 50%</td> </tr> <tr> <td>그 외</td> <td>10년 100% +5년 50%</td> <td>7년 100% +4년 50%</td> </tr> </tbody> </table> <p>○ (감면한도) 지방투자누계액×70%+지방근무상시근로자 수×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p> <p>○ (사후관리)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정* * 1명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p> <p>○ '28.12.31.</p>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낙후지역*1	그 외 지역																																			
수도권*2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3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4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5.12.31. 이전에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19 사회적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5의6①·③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li> <li>○ (감면율) 3년 100%+2년 50%</li> <li>○ (감면한도) 1억원+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2천만원</li> <li>○ (적용기한) '25.12.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연장</li> <li>○ (좌 동)</li> <li>○ '28.12.31.</li> </ul>

<개정이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 20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 확대 조특법 §85의6②·③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li> <li>○ (감면율) 3년 100%+2년 50%</li> <li>○ (감면한도) 1억원+장애인상시근로자 수×2천만원</li> <li>○ (적용기한) '25.12.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 확대</li> <li>○ (감면율) 3년 100%+2년 50%+5년 30%</li> <li>○ (좌 동)</li> <li>○ '28.12.31.</li> </ul>

<개정이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

**2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

종전	개정
<p>□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li> </ul> </li> <li>○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b>4년/10년 이상 30% / 75%</b></li> <li>-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b>4년/10년 이상 20% / 50%</b></li> </ul> </li> <li>○ (적용기한) '25.12.31.</li> </ul>	<p>□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8.12.31.</li> </ul>

<개정이유> 소형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지원

**2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의3①

종전	개정
<p>□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b>70%</b>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b>50%</b>)</li> <li>○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li> <li>○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li> <li>○ (적용기한) '25.12.31.</li> </ul>	<p>□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8.12.31.</li> </ul>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

**23**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조특법 §99의9

종전	개정
<p>□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p> <p>○ (업종)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b>창업중 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b></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감면율) 5년 100%, 2년 50%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p> <p>○ (감면한도) <b>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해</b> 다음을 적용</p> <p style="padding-left: 20px;">-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p>	<p>□ <b>감면요건 신설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적용</b></p> <p>○ (좌 동)</p> <p>○ (요건) <b>5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b></p> <p>○ (좌 동)</p> <p>○ <b>중소기업에도 감면한도 적용</b></p> <p style="padding-left: 20px;">- (좌 동)</p>

<개정이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24 유턴기업 세액감면 추징사유 추가** 조특법 §104의24④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받은 소득·법인세 추징사유</li> <li>○ <b>복귀일로부터 3년 내에 폐업·해산한 경우</b></li> <li>○ <b>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하지 않은 경우</b></li> <li>○ <b>국외사업장을 축소해 감면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b></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추징사유에 국외사업장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가</b></li>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b>국외사업장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b></li> </ul>

〈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확대\* 및 조세회피 방지

\*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이전에 국내로 복귀한 후, 사후적으로 국외사업장을 축소완료하는 경우도 유턴기업 세액 감면 적용(조특령 개정 예정)

〈경과조치〉 '25.12.31.까지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종료** 조특법 §104의25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li> <li>○ (대상) 한국거래소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이용해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석유판매업자</li> <li>○ (공제액) 석유제품 공급가액의 <b>0.3%</b></li> <li>○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li> <li>○ (적용기한) '25.12.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적용기한 종료</b></li> </ul>

〈개정이유〉 실효성 낮은 조세지원 정비

**26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 조특법 §104의30, 조특령 §104의27

종전	개정
<p>□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p> <p>* 국적선사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증한 기업</p> <p>○ (대상) 국제물류주선업자*</p> <p>*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자</p> <p>○ (요건)</p> <p>①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p> <p>② 해당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p> <p>○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전년대비 증가액의 3%</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적용기한) '25.12.31.</p>	<p>□ 세액공제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p> <p>○ (좌 동)</p> <p>○ (기본공제)</p> <p>- (요건) 운송비용 → 물동량</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0.5%</p> <p>○ (추가공제)</p> <p>- (요건) 전체 원양 해상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물동량이 25% 이상</p> <p>- (공제율) 원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원양 운송비용의 1%</p> <p>○ '28.12.31.</p>

<개정이유>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지원 및 원양해운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7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의2·§64·§99의9·§121의8·§121의9·

§121의17·§121의20~22

종전	개정																				
<p>□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p> <p>○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p> <p>○ (감면적용 특구) 위기지역 등 15개 특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특구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면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위기지역</td> <td style="text-align: center;">5년 100% + 2년 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농공단지</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5년 5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개발특구</td> <td rowspan="13" style="text-align: center;">3년 100% + 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 + 2년 2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주투자진흥지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업도시개발구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역개발사업구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여수해양박람회특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새만금투자진흥지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평화경제특별구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아시아문화중심도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금융중심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첨단의료복합단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가식품클러스터</td> </tr> </tbody> </table> <p>○ (적용기한) '25.12.31.</p>	특구명	감면율	위기지역	5년 100% + 2년 50%	농공단지	5년 5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3년 100% + 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 + 2년 2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별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p>□ 적용기한 연장</p> <p>○ (좌 동)</p> <p>○ '28.12.31.</p>
특구명	감면율																				
위기지역	5년 100% + 2년 50%																				
농공단지	5년 5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3년 100% + 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 + 2년 2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별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28**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33①

종전	개정
<p>□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p> <p>*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li> <li>○ (감면율) 5년 100% + 2년 50%</li> <li>○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li> <li>○ (적용기한) '26.12.31.</li> </ul>	<p>□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8.12.31.</li> </ul>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29** 상시근로자 제외 총급여액 기준 통일 조특령 §17①·§26의4②

현행	개정안
<p>□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u>7천만원 초과</u></li> <li>○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u>7천만원 이상</u></li> <li>○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8천만원 이상</li> </ul>	<p>□ 총급여액 기준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8천만원 이상</u></li> <li>○ (좌 동)</li> </ul>

<개정이유> 공제제도 적용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제2부

**소득세법**



## 1 총칙

## (1)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소령 §4 ③

종전	개정
□ 거주자의 정의 ○ 국내에 주소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신설>	□ 거소를 둔 기간(183일) 계산 시 직전 과세기간 고려 ○ (좌 동)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포함

<개정이유>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 ① 개정 내용 : 거주자 범위 확대

※ 거주자/비거주자 과세범위 : (거주자)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비거주자) 국내 원천소득  
 거주자 범위를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서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

\* (종전) 1과세기간 183일 → (개정) 1과세기간 183일 또는 계속하여 183일

## ② 183일 기준 변경 관련 사례

□ (사례 1) '26.8.10.부터 국내에 계속하여 거소를 둔 경우

○ (종전) '27.1.1.부터 183일이 되는 '27.7.2.부터 거주자

○ (개정) '26.8.10.부터 183일이 되는 '27.2.8.부터 거주자

□ (사례 2) '26.8.10.~'27.6.30.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 (종전) '26년 144일, '27년 181일로 183일 기준에 미달하므로 '26년, '27년 모두 비거주자

○ (개정) '27.2.8.~'27.6.30. 거주자

## 2 금융소득

### (1) 보장성보험 연금전환시 저축성보험 전환 간주 제도 도입 소령 §25⑨신설

#### 1) 원칙

종전	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장성보험 연금전환시 저축성보험 전환 간주 제도 도입</li> <li>○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일부를 약정에 따라 감액하여 그 감액분(이하 “보험금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경우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한 것으로 간주</li> <li>○ 비과세요건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가 10년 이상일 것 : 보험금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날(이하 “최초연금지급일”)을 계약변경에 따른 저축성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간주 → 10년이 지나야 비과세됨.</li> <li>②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최초연금지급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납입기간에 포함함</li> <li>③ 기본보험료 선입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 연금지급일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변경 이후에도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li> <li>④ 월납입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일 것(17.4.1. 이후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 : 별도 규정 없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li> </ul> </li> <li>○ (좌 동)</li> </ul>

〈개정이유〉 보장성보험의 유동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5.7.1.부터 시행

〈경과규정〉 '25.7.1. 전에 체결된 보장성보험계약으로서 해당 계약에 보험금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계약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적용함(영 부칙 §3)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645, 2021.06.2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 전환 시 최초납입일 소급인정 특례 소령 §25<sup>⑩</sup> 신설

종전	개정
<p>〈신설〉</p>	<p>□ 특례요건 충족 시 기존 보장성보험 최초납입일을 저축성보험 최초납입일로 소급인정</p> <p>○ 다음의 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을 저축성보험 최초납입일로 봄</p> <p>① (보험종류·금액) 기존 보장성보험이 월적립식이고,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등 신체상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며, 보험금이 9억원 이하일 것</p> <p>② (납입완료) 최초연금지급일 전에 보험료 납입 완료</p> <p>③ (동일인) 계약변경 후 저축성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같은 사람일 것</p> <p>④ (연령요건) 계약자가 55세 이후부터 보험금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을 것</p>

〈적용시기〉 2025.7.1.부터 시행

〈경과규정〉 2025.7.1. 전에 체결된 보장성보험계약으로서 해당 계약에 보험금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계약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적용

**2026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명보험사에서 출시합니다**  
2025-12-30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 ✓ **신청자격** • 신청시점에 만 55세 이상 계약자 (소득, 재산요건 X)
- ✓ **대상계약**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
  - 보험료 납입이 완료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 과거계약도 유동화 가능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 일괄 부가
- ✓ **신청방법** •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

금융위원회

(2) 종합투자계좌(IMA) 관련 소득구분 규정 신설 소령 §26의3㉔ 신설

종전	개정(안)
<p>□ 배당소득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법인,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및 분배금</li> <li>○ 의제배당</li> <li>○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li> <li>○ 유사배당소득</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배당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p>	<p>□ 배당소득 범위 확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배당소득 종합투자계좌* 운용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된 이익을 유사배당소득에 포함</li> </ul> <p style="margin-left: 40px;">* 종합투자계좌(IMA)로부터 수익자가 분배받는 이익은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함</p> <p>○ (좌 동)</p>

<개정이유> 종합투자계좌로부터 발생한 소득 분류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

<종합투자계좌의 이해>

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종합투자계좌)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고객 예탁금을 통합하여 기업대출, 회사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인수합병(M&A) 인수금융,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벤처기업 지분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임. IMA는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만기 시 원금 지급의무를 부담함. 그러나 중도해지 시 또는 종합금융투자회사 파산 시에는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음. 금융위원회는 2025.11.19.에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첫 IMA 사업자로 지정하였으며, 한국투자증권이 2025.12.18. 최초로 IMA 상품(한국투자 IMA S1)을 출시함.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나 분리과세 혜택은 없으므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됨.

(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소령 §26의3⑥

종전	개정
<p>□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p> <p>○ 상법 §461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자본준비금과 3% 재평가세 과세된 재평가적립금의 감액배당 등은 제외)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p> <p style="text-align: center;">〈후단 신설〉</p>	<p>□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범위 조정</p> <p>○ (좌 동)</p> <p>이 경우 다음의 거주자가 받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해당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li> <li>-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다만,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기업과 증견기업의 대주주* 외의 자 제외)</li> </ul> <p>* 양도소득세 규정의 대주주를 말함</p>

<개정이유>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4) 거주자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 소령 §89·§163

종전	개정(안)
〈신설〉	<p>□ 보유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문화</p> <p>○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조정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72⑤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p> <p>- <b>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받은 경우 취득가액에 배당받은 금액 차감</b></p> <p>- 재고자산 평가 등에 따른 자산 평가액 반영</p> <p>- 자본적 지출액, 불공정합병, 불균등 증자·감자로 분여받은 이익 등 취득가액에 가산 등</p>

<개정이유>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

■ 거주자가 받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정리

법인	주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상장법인	대주주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서 제외 → 장부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임(Gross-up대상)*1	차감*3
	대주주 외의 자	전액 배당소득에서 제외*2	차감*3
비상장법인	K-OTC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대주주 외의 자*1	전액 배당소득에서 제외*2	차감*3
	위 외의 주주	장부가액을 한도로 배당소득에서 제외 → 장부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임(Gross-up대상)*1	차감*3

\*1. 3% 재평가세 과세된 재평가적립금의 감액배당은 Gross-up대상이 아님

\*2.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해도 과세하지 않음. 이는 감액배당을 받지 않고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기업에 유보된 자본준비금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되어 과세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한 것임.

\*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모든 주주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함. 이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이 감소하므로 감자 등의 경우 의제배당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감액하지 않은 경우보다 커짐.

(5)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조특법 §104의27 신설

종전	개정										
〈신설〉	<p>□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p> <p>○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고배당기업”이라 함)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특례배당소득)</p> <p>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함)일 것 (다만, 투자회사 및 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p> <p>②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p> <p>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p> <p>㉠ 직전 사업연도의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익배당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배당성향”)이 40% 이상일 것</p> <p>㉡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p> <p>○ (과세특례) 특례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특례배당소득의 산출세액은 다음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특례배당소득</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천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총 금액의 1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8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8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2억3,3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td> </tr> </tbody> </table> <p>○ (합산배제신청)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함</p> <p>○ (요건구비 공시)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기업이 고배당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공시하여야 함</p> <p>○ (적용기간) '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p>	특례배당소득	세율	2천만원 이하	총 금액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8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8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50억원 초과	12억3,3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특례배당소득	세율										
2천만원 이하	총 금액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8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8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50억원 초과	12억3,3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조특령 §104의24 신설

종전	개정(안)
〈신설〉	<p>□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조특령 §104의24①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당소득의 범위) 고배당기업의 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받은 배당소득* (∴ 주식배당, 현물배당은 제외)</li> <li>* 담보, ETF 설정, RP 거래 등에 활용되는 주식 대차거래(개인주주가 증권사에 주식을 대여하는 것)를 한 경우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상당액 포함</li> </ul>
	<p>□ 고배당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조특령 §104의24②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법 §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항 각 호의 법인 제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선박투자회사 등</li> </ul>
	<p>□ 배당성향 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배당성향 산정방법</li>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align: center;"> <math display="block">\text{현금배당총액}^* \div \text{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math> </div> <li>○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배당성향 산정방법</li>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align: center;"> <math display="block">\text{현금배당총액}^* \div \text{결산기준 개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math> </div> <li>* 현금배당총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을 금전으로 배당한 총액을 말함. 따라서 사업연도 중의 중간배당, 분기배당과 사업연도 결산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정기배당의 합계액임.</li> <li>○ 배당성향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경우 (원칙) 배당성향을 25%로 간주 → 이익배당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여야 함 (예외)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배당성향을 0으로 봄 → 고배당기업이 될 수 없음</li> </ul>
	<p>□ 기준연도 직용요건의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판단할 때 '24.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보다 배당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li> </ul>
	<p>□ 분리과세 신청절차(조특령 §104의24⑦·⑧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과세 신청을 하려는 거주자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li> </ul> <p>□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배당기업의 공시 방법 및 절차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준용함</li> </ul>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

(6)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1의25

종전	개정
〈신설〉	<p>□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 신설</p> <p>○ (특례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청년미래적금에 '28.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p> <p>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함)</p> <p>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함)</p> <p>③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업종,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p> <p>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소득, 재직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p> <p>-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p> <p>○ (미래청년적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p> <p>①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p> <p>②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 이하일 것</p> <p>③ 계약기간이 3년일 것</p> <p>*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p>

〈개정이유〉 청년 자산형성 지원

〈시행시기〉 '26.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청년미래적금의 세부내용 조특령 §93의11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91의25) —

- 일정소득(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연 납입한도 600만원)
  - 청년의 연령 요건, 가입 대상 소상공인, 계좌 요건, 특별중도해지사유 등은 시행령에 위임

종전	개정(안)
〈신설〉	<p>□ 청년미래적금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 연령 요건)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 제외]</li> <li>※ 단, 최초로 청년미래적금에 가입이 가능한 기간(26년)에 한하여 34세 이하인지 여부는 '25.12.31. 기준으로 판단함</li> <li>○ (가입 대상 소상공인)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로서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li> <li>○ (계좌 요건) 계약기간이 3년이며, 서민금융진흥원*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li> <li>○ (특별중도해지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❶의 사유는 사유 발생 후 해지가 가능하며, ❷의 사유는 사유 발생 후 6개월 내로 해지 가능</li> <li>❶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li> <li>❷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생 등</li> </ul> </li> </ul>

〈개정이유〉 청년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91의22

종전	개정
<p>□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요건*) ❶ &amp; 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li> <li>❶ 19~34세</li> <li>❷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li> </ul> </li> <li>○ (운용가능재산) 예·적금, 회사채, 국내상장 주식 등</li> <li>○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통산,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입한도) 연 840만원</li> </ul> </li> <li>○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장기요양·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경우 만기 전 해지 시 추징 배제</li> <li>*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li> </ul> </li> <li>○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li> </ul>	<p>□ 적용기한 종료</p>

<개정이유>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라 중복 제도 정비

### 3 사업소득

#### (1)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소법 §12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li> <li>○ (대상)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양도소득</li> <li>○ (한도) 연 6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 한도 확대</li> <li>○ (좌 동)</li> <li>○ 연 3천만원</li> </ul>

<개정이유> 임업 종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업종별 소득세 비과세 규정 비교

구분	비과세 대상 소득	비과세 기준
농업 (작물재배업)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수입금액 연 10억원 이하
어업 (어로·양식어업)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	소득금액 연 5천만원 이하
임업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 소득	소득금액 연 3천만원 이하
농어가부업	축산, 고공품(藁工品)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기타 유사 활동	소득금액 연 3천만원 이하 * 별표 1의 축산규모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

(2)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령 별표1

종전	개정(안)
<p>□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p> <p>○ 가축별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젓소·소 50마리</li> <li>- 돼지 700마리</li> <li>- 산양·면양 300마리</li> <li>- 토끼 5,000마리</li> <li>- 닭·오리 15,000마리</li> <li>- 양봉 100군</li> </ul> <p style="text-align: right;">〈추가〉</p>	<p>□ 농가부업규모 축산 범위 확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p style="text-align: right;">- 개 400마리 (단, '27년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p>

〈개정이유〉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농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소법 §25①(2)

종전	개정
<p>□ 주택보증금에 대한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과세</p> <p>○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right;">〈추가〉</p>	<p>□ 과세대상 확대</p> <p>○ (좌 동)</p> <p>○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p>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3.12.31.에 소득세법 개정시 신설되었으며, '26.1.1.부터 시행됨)

(4)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 소령 §51

종전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손실보상금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양식업)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양도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li> <li>○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소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권, 양식업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포기·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봄</li> <li>○ (좌 동)</li> </ul> </li> </ul>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4 근로소득

### (1)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소법 §12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li> <li>○ (한도) 월 20만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자녀 1인당 월 20만원</li> </ul> </li> </ul>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사례]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근로자 A씨가 회사에서 매월 40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26년) 비과세금액 : 20만원 × 2명 = 40만원, 따라서 보육수당은 전액 비과세됨

(2)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확대 소법 §12

종전	개정
<p>□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p> <p>❶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p> <p>❷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p> <p>❸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가&gt;</p>	<p>□ 대상 확대</p> <p>❶~❸ (좌 동)</p> <p>- 「사학연금법」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p>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비과세 대상)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확대 소령 §10의2

종전	개정(안)
<p>□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p> <p>①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한도 없음</p> <p>②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 한도 없음</p> <p>③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월 150만원</p>	<p>□ 한도 확대</p> <p>①·② (좌 동)</p> <p>③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사학연금법」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p> <p>휴직일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 월 250만원</p> <p>휴직일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 월 200만원</p> <p>휴직일 7개월 이후 : 월 160만원</p>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 소령 §17

종전	개정(안)
<p>□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p> <p>○ 비과세 기준</p> <p>-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p> <p>* 봉급·급료·보수 및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 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 급여를 뺀 금액</p> <p>-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이하</p> <p>○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p>	<p>□ 비과세 대상 확대</p> <p>○ (좌 동)</p> <p>- 260만원 이하</p> <p>- 3,700만원 이하</p> <p>○ (좌 동)</p>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5 연금소득

### (1)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법 §129

종전	개정																						
<p>□ 사적연금(본인 납입액 중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세율</p> <p>○ 연금소득자 나이별 세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연금수령일의 연금수령자 나이</th> <th>원천징수세율</th> </tr> </thead> <tbody> <tr> <td>70세 미만</td> <td>5%</td> </tr> <tr> <td>70세 이상 80세 미만</td> <td>4%</td> </tr> <tr> <td>80세 이상</td> <td>3%</td> </tr> </tbody> </table> <p>○ 사망까지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 수령 시 : 4% * 종신계약시 수령나이별 세율과 4% 중 낮은 세율 적용</p> <p>□ 이연퇴직소득(회사 부담분) 연금수령시 분리과세</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연금수령 연차</th> <th>원천징수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0년 이하</td> <td>연금외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td> </tr> <tr> <td>10년 초과</td> <td>연금외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td> </tr> </tbody> </table>	연금수령일의 연금수령자 나이	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연금수령 연차	원천징수세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10년 초과	연금외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p>□ 종신계약시 세율 인하</p> <p>○ (좌 동)</p> <p>○ <u>4% → 3%</u>로 인하</p> <p>□ 장기수령시 감면을 확대</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연금수령 연차</th> <th>원천징수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0년 이하</td> <td>연금외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td> </tr> <tr> <td>10년 초과 20년 이하</td> <td>연금외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td> </tr> <tr> <td><b>20년 초과</b></td> <td>연금외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50%</td> </tr> </tbody> </table>	연금수령 연차	원천징수세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금외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b>20년 초과</b>	연금외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50%
연금수령일의 연금수령자 나이	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연금수령 연차	원천징수세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10년 초과	연금외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연금수령 연차	원천징수세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금외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b>20년 초과</b>	연금외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50%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6 소득공제

###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126의2

종전		개정																																																					
<p>□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li> <li>○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15%</td> </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 <td>30%</td> </tr> <tr> <td>③ 전통시장·대중교통</td> <td>40%</td> </tr> <tr> <td>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td> <td>30%</td> </tr> </tbody> </table> <p>* ④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한도)</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공제한도</th> <th colspan="2">총급여</th> </tr> <tr> <th>7천만원 이하자</th> <th>7천만원 초과자</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 <td>300</td> <td>250</td> </tr> <tr> <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 <td>전통시장</td> <td rowspan="3">300</td> <td rowspan="2">200</td> </tr> <tr> <td>대중교통</td> </tr> <tr> <td>도서공연등</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25.12.31.</li> </ul>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30%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p>□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등 1명당 기본공제 한도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등 1명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li> </ul> </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 rowspan="2">공제한도</th> <th colspan="2">총급여</th> </tr> <tr> <th>7천만원 이하자</th> <th>7천만원 초과자</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 <td>300</td> <td>250</td> </tr> <tr> <td colspan="2">자녀등 1명</td> <td>350</td> <td>275</td> </tr> <tr> <td colspan="2">자녀등 2명 이상</td> <td>400</td> <td>300</td> </tr> <tr> <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 <td>전통시장</td> <td rowspan="3">300</td> <td rowspan="2">200</td> </tr> <tr> <td>대중교통</td> </tr> <tr> <td>도서공연등</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8.12.31.</li> </ul>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자녀등 1명		350	275	자녀등 2명 이상		400	3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④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30%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자녀등 1명		350	275																																																				
자녀등 2명 이상		400	3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추가되는 자녀등의 범위 규정 조특령 §121의2

<p>— 법 개정내용(조특법 §126의2) —</p>
<p>□ 자녀·손자녀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p> <p>○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1명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p>

종전	개정(안)
〈신설〉	<p>□ 자녀등의 범위</p> <p>○ 직계비속*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p> <p style="margin-left: 20px;">*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재혼자의 자녀 포함</p> <p style="margin-left: 20px;">❶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p> <p style="margin-left: 20px;">❷ 20세 이하*일 것</p> <p style="margin-left: 40px;">*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배제</p> <p style="margin-left: 20px;">❸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것</p>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2)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 조특령 §121의2

종전	개정
<p>□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하는 교육비</p> <p>○ 학교(대학원 포함)·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 비용 기타 공납금</p>	<p>□ 제외대상 추가</p> <p>○ (좌 동)</p> <p>○ 평생교육시설·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 수업료</p> <p>○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p>
<p>〈추가〉</p>	

〈개정이유〉 중복지원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7

종전	개정
<p>□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li> <li>- 총급여 7,000만원 이하</li> </ul> </li> <li>○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li> <li>○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자의 사망 등</li> <li>- 해외이주</li> </ul> </li> <li>○ (적용기한) '25.12.31.</li> </ul>	<p>□ 적용기한 연장 및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li> </ul> </li> <li>○ '28.12.31.</li> </ul>
<p>□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4세) 및 그 배우자</li> <li>-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li> <li>*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li> </ul> </li> <li>○ (세제지원)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500만원)</li> <li>○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자의 사망 등</li> <li>- 해외이주</li> </ul> </li> <li>○ (적용기한) '25.12.31.</li> </ul>	<p>□ 적용기한 연장 및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li> </ul> </li> <li>○ '28.12.31.</li> </ul>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 및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

(3)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조특령 §80의3

종전	개정(안)
<p>□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과세</p> <p>○ (원칙) 기타소득 과세</p> <p>○ (예외) 다음 사유에 해당시 퇴직소득 과세</p> <p>① 천재·지변</p> <p>② 해외이주</p> <p>③ 3월 이상 입원·요양</p> <p>④ 중기중앙회 해산</p> <p>⑤ 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경영악화</p> <p style="padding-left: 20px;">- (경영악화 요건)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p>	<p>□ 경영악화 요건 완화</p> <p>○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 50% → 20%</p>

<개정이유> 경영악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 7 세액공제

### (1) 교육비세액공제 확대

1)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세액공제 소법 §59의4③

종전	개정
<p>□ 교육비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li> <li>○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li> <li>-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li> <li>-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교육비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공제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ul> </li> <li>■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li> </ul>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범위 구체화 소령 §118의6

| 법 개정내용(소법 §59③(1))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예능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

○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

종전	개정(안)
<p>&lt;신설&gt;</p>	<p>□ 예능학원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원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예능(음악, 미술, 무용)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li> </ul> <p>□ 체육시설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함)가 운영하는 체육시설</li> <li>* 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함)</li> <li>○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li> <li>※ 현행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체육시설과 동일</li> </ul> <p>□ 교육비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li> <li>※ 현행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와 동일</li> </ul>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소법 §59의4③

종전	개정
<p>□ 교육비 특별세액공제</p> <p>○ (적용범위) 본인 및 아래 기본공제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li> <li style="padding-left: 20px;">*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18세 미만 한정</li> <li>- 직계비속등(나이 요건 없으나 소득 요건* 있음)</li> <li style="padding-left: 20px;">*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li> </ul> <p>○ (공제율) 15%</p> <p>○ (교육비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장애인(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li> <li>- 대학생 : 900만원</li> <li>-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 300만원</li> </ul>	<p>□ 대상 확대</p> <p>○ (좌 동)</p> <p style="padding-left: 20px;">- 소득요건 폐지</p> <p>○ (좌 동)</p>

<개정이유>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구체적인 개정이유>

부모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하는 가정은, 경제적 여유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가정보다 지원의 필요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소득요건 제한으로 교육비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소득요건을 폐지한 것임.

(2)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방식 개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간접투자회사 등이 그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적용 대상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소법 §57의2①·②·§129⑥·⑦·⑧

종전	개정
<p>□ 종합과세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소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 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p> <p>○ 종합소득금액</p>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원천징수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소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 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p> <p>○ 배당소득</p>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공제 대상 소득에 퇴직소득 추가</p> <p>○ (좌 동)</p> <p>○ 퇴직소득금액</p> <p>□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p> <p>○ (좌 동)</p> <p>○ 이자소득</p> <p>○ 연금소득</p> <p>○ 퇴직소득</p> <p>○ 기타소득</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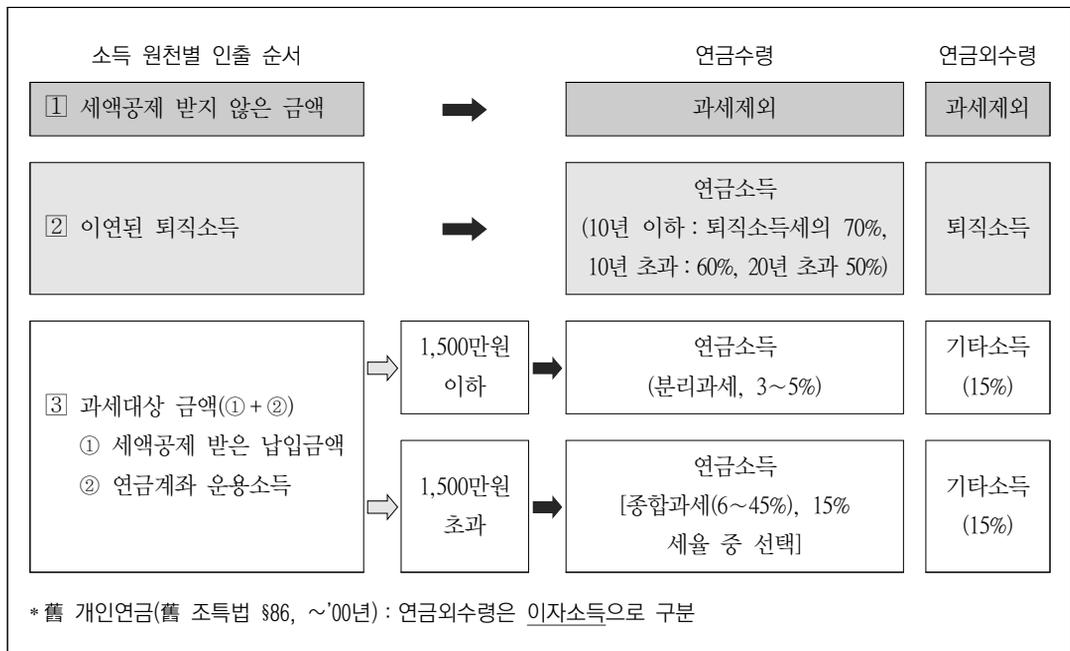
〈개정이유〉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 부터 적용

<구체적인 개정이유>

종전에는 종합소득 신고단계에서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이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라고 함)가 적용되는 소득을 종합소득으로만 한정하였음. 이에 따라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 중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단계에서 외국법인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서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신고단계에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적용대상 소득의 범위를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을 추가하고, 원천징수 단계에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소득을 배당소득 외에,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을 추가하였음.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의 구분]



2) 개인투자자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방식 변경 소법 §57의2②·③

종전	개정
<p>□ 종합소득 과세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금액)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 한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li> <li>○ (공제한도금액) <math>A \times B / C</ma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 종합소득산출세액</li> <li>B :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li> <li>C : 종합소득금액</li> </ul> </li> <li>○ (이월공제) 공제한도금액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적용</li> </ul>	<p>□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징수 시 계산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 &lt;삭제&gt;</p> <p>※ 원천징수단계에서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액이 배당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10년간 이월하여 배당소득공제한도 내에서 공제(소법 §129⑦)</p>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3)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적용방식 구체화

① 개인의 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소령 §117의2③·④

법 개정내용(소법 §57의2)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변경 및 공제한도 삭제

○ 구체적인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등은 시행령에 위임

종전	개정(안)
<p>□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p> <p>○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① 또는 ②</p> <p>① 국내 &lt; 외국 원천징수세율 : <math>\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text{한계세율}</math></p> <p>② 국내 ≥ 외국 원천징수세율 : 1 - 한계세율</p>	<p>□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및 퇴직소득 공제금액 추가</p> <p>※ 개정 전과 유사한 수준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액공제를 받으면서도 단순한 방식</p> <p>○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금액 : <math>(A \times B) + (C \times D) + (E \times F)</math></p> <p>A :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 공제금액의 합계액                      B : 배당소득 조정계수                      C : 연금소득 원천징수 시 공제금액의 합계액                      D : 연금소득 조정계수                      E :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 공제금액의 합계액                      F : 이자소득 조정계수</p> <p>○ 배당소득 조정계수 : 기준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조정계수를 적용함</p> <p>① 기준소득</p>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기준소득 =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소득 - 연금보험료 공제금액</li> <li>-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금액)</li> <li>- 기타 차감 금액*</li> </ul> <p>* 기타 차감 금액 :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 계산 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주택등매매차익</p> </div>

② 조정계수

기준소득		조정계수
1천 400만원 이하		1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99
5천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0.88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0.76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72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7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67
10억원 초과		0.64

〈추가〉

○ 연금소득 조정계수 : 0.89

○ 이자소득 조정계수 : 기준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조정계수를 적용함

기준소득		조정계수
1천 400만원 이하		1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89
5천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0.73
8천 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0.53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4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40
10억원 초과		0.35

○ 퇴직소득산출세액 공제금액 :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 공제금액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규정 소령 §117의2·§189의2

종전	개정(안)
<p>&lt;신설&gt;</p>	<p>□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간접투자소득이 포함된 경우</li> <li>○ (공제방식) 공제적립액 누적 후 연금계좌 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공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액 적립)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 시 공제적립액 계산* 및 누적 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시마다 외국납부세율을 14%로, 국내세율을 9%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적립액으로 누적 관리</li> <li>** 공제적립액 : <math>\text{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times \left( \frac{9\%}{14\%} - 9\% \right) = \text{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times 55\%</math></li> </ul> </li> <li>- (공제적용) 연금계좌 인출 또는 계좌이전*으로 세액 발생 시마다 해당 세액에서 공제적립액을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li> </ul> </li> </ul> </li> <li>※ 연금계좌는 일반적으로 노후에 장기간에 걸쳐 인출되므로 공제적립액누적액의 차감기간의 제한이 없음</li> </ul>

<개정이유>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58

종전		개정	
<p>□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li> <li>○ 세액공제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계산식을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함</li> </ul>		<p>□ 세액공제율 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세액공제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계산식을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함</li> </ul>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10만원 이하	기부금 × 100/110	10만원 이하	기부금 × 100/110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0만원 × 100/110 + (기부금 - 10만원) × 15% (특별재난지역 기부시* 3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0만원 × 100/110 + (기부금 - 10만원) × 40%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0만원 × 100/110 + 10만원 × 40% + (기부금 - 20만원) × 15% (특별재난지역 기부시* 30%)
		*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경우로 한정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4)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1)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조특법 §95의2

종전	개정
<p>□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p> <p>❶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p> <p>※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p> <p>- 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p> <p>*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원리금 공제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적용대상 추가</p> <p>❶ (좌 동)</p> <p>❷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p> <p>㉔ 조특법 제95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p> <p>㉕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p>
<p>□ 월세 세액공제 한도</p> <p>○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p>	<p>□ 한도 계산시 세대주·배우자 월세액 합산</p> <p>○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 연간 1,000만원 한도</p>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무주택 주말부부 요건 구체화 조특령 §95

법 개정내용(조특법 §95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주거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추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를 달리하는 등 구체적인 적용요건은 시행령에 위임</li> </ul> </li> </ul>	

종전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 주말부부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li> <li>②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등*이 무주택자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li> </ul> </li> </ul> </li> </ul>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면적 확대 조특령 §95

종전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주택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및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주택면적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li> <li>② ① 외의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li> </ul> </li> </ul> </li> </ul>

〈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8 퇴직소득

### (1)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보완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령 §203

종전	개정
<p>□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개정</p> <p>○ (내용) 계산방법 보완</p> <p>- (개정전) ❶전체 산출세액*</p> <p style="padding-left: 20px;">- ❷기 지급 산출세액**</p> <p style="padding-left: 40px;">*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p> <p style="padding-left: 40px;">** 기납부 또는 이연된 세액</p> <p>- (개정후) ❶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p> <p style="padding-left: 20px;">- ❷(정산전 이연퇴직소득세액*</p> <p style="padding-left: 40px;">+ 정산전까지 원천징수세액)</p> <p style="padding-left: 40px;">*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이연퇴직소득 비율로 안분 계산</p> <p>○ (이유)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에 포함함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세액 환급</p> <p>○ (적용시기) '26.1.1.</p> <p>○ (대상) 기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p>	<p>□ 적용대상 축소</p>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p>○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중 개정 전 방식에 따라 계산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만 개정후 방식 적용</p>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국외원천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신청요건 완화 소령 §203

종전	개정(안)
<p>□ 퇴직소득 세액 정산</p> <p>○ (정산방법)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신청요건 완화</p> <p>○ (좌 동)</p> <p>- 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 포함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원천징수영수증 대체 가능</p>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세액 정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9 소득세 절차규정

### (1)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 소법 §144의2②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근로소득세액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시</li> <li>○ (방법) 3개월(2~4월)에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분납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득세액 추가</li> <li>○ (좌 동)</li> </ul> </li> </ul>

<개정이유>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납부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 소법 §162의2①·162의3③

종전	개정
<p>□ 신용카드가맹점의 발급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li> <li>○ (예외)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대규모점포, 체육시설</li> <li>- (방법)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운용 등</li> </ul> </li> </ul> <p>□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합산발급 대상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대상 및 방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여행업 등*</li> <li>* 구체적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li> <li>-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또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운용 등*</li> <li>*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li> </ul> </li> </ul> <p>□ 합산발급 예외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예외)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여행업 등</li> <li>- (방법)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또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운용 등</li> </ul> </li> </ul>

〈개정이유〉 사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여행업을 합산발급대상에 추가한 이유〉

여행업의 경우 항공권, 숙박, 교통, 입장권, 식사, 가이드 비용 등 다수의 공급자의 서비스를 일괄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합산발행을 금지할 경우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만 강요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합산하여 발급할 필요성이 있음.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보완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사업자 범위 등 소령 §210의2·§210의3

법 개정내용(소법 §162의2·§162의3)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의 합산발급 허용	
○ (사업자) 대구모점포, 체육시설 운영사업자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발급방법)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을 합산	

종전	개정
〈신설〉	<p>□ 합산발급 가능 사업자</p> <p>○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p> <p>□ 합산발급 방법</p> <p>○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설치·운영</p>

〈개정이유〉 사업자 편의 도모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시기 보완 소령 §210의3

종전	개정(안)
<p>□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p> <p>○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p> <p>〈단서 신설〉</p>	<p>□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보완</p> <p>○ (좌 동)</p> <p>- 단, 여행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 발급 가능</p>

〈개정이유〉 사업자 편의 도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령 별표3의3

종전	개정
<p>□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p> <p>*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p> <p>① (보건업) 병·의원, 약사업 등</p> <p>②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p> <p>③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p> <p>④ (숙박 및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등</p> <p>⑤ (기타 업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p> <p>⑥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p> <p>* ①~⑥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p> <p>※ 전체 138개 업종</p>	<p>□ 의무발급대상 확대</p> <p>○ (좌 동)</p> <p>○ 4개 업종* 추가('26년~)</p> <p>* ①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② 사진 처리업, ③ 뉴시장 운영업, ④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p> <p>○ (좌 동)</p>

<개정이유> 소득과약 제고 및 세원양성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준용범위 명확화 소령 §211의2

종전	개정(안)
<p>□ 전자계산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발급대상)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li> <li>○ (발급의무 개시)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li> <li>○ (전자세금계산서 규정* 준용범위)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시스템 사업자의 등록</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p>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의무발급대상자에 대한 통지규정 준용 명확화</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div> <p>-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한 통지*</p> <p style="text-align: center;">* 관할 세무서장은 발급의무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의무(미수령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발급의무 발생)</p>

<개정이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통지의무 명확화

## 1 수용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개정 확정)

종전	개정
<p>□ 주택부수토지 인정범위</p> <p>○ 배율 : 토지의 소재지·용도지역별로 3배·5배·10배*</p> <p>* 도시지역 내의 토지  수도권 내 - 녹지지역 5배(주거·상업·공업지역 : 3배)  수도권 밖 - 5배</p> <p>도시지역 밖의 토지 : 10배</p> <p>○ 기준일 : 양도일</p> <p style="text-align: center;">〈단서 신설〉</p>	<p>□ 예외 신설</p> <p>○ (좌 동)</p> <p>○ 토지수용시 용도지역 판정기준일 예외 신설</p> <p>-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p>

〈개정이유〉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 수도권 밖의 지역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기준 상향(개정 확정)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li> </ul> </li> <li>○ 주택소재지 : 인구감소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수도권 및 광역시 구지역은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은 포함</li> </ul> </li> <li>○ 주택가액 : 기준시가(공시가격) 4억원 이하</li> <li>○ 적용기간 : 2024.1.4.~2026.12.31. 취득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례 적용 주택 가액기준 상향</li> <li>○ (좌 동)</li> <li>○ 비수도권 가액기준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밖의 지역 : 기준시가 9억원</li> <li>- 수도권 : 기준시가 4억원</li> </ul> </li> <li>○ (좌 동)</li> </ul>

<개정이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 상한을 종전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5년 8월 14일 이후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대상 지역 확대(개정 확정)

종전	개정
<p>□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p> <p>*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p> <p>○ 주택 소재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지역*(단, 수도권 및 광역시 구지역은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은 포함)</li> <li>*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현재 89개 지역 지정)</li> </ul> <p>○ 주택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도권 밖의 지역 : 기준시가 9억원 이하</li> <li>② 수도권 : 기준시가 4억원 이하</li> </ul> </li> </ul>	<p>□ 특례 적용대상 지역 확대</p> <p>○ 적용대상 지역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b>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b>(단, 광역시 구지역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감소관심지역 :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현재 18개 지역 지정, 예 : 경기 포천시,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등)</li> </ul> </li> <li>- 인구감소지역</li> </ul> <p>○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구감소관심지역 : 기준시가 4억원 이하</b></li> </ul>

<개정이유> 지방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여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4 귀농주택 범위 합리화(개정 예정)

종전	개정
<p>□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p> <p>*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내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p> <p>○ 귀농주택 범위 : 영농 또는 영어 목적으로 취득하여 거주하는 다음 요건 충족하는 주택</p> <p>① 취득 당시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이 아닐 것</p> <p>② 대지면적 660㎡ 이내</p> <p>③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p> <p>④ 농지소유자(1,000㎡ 이상) 또는 배우자가 취득한 해당 농지 소재지의 주택 또는 <b>어업인</b>이 취득한 주택</p>	<p>□ 범위 합리화</p> <p>○ 어촌 귀어주택 취득자 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 어업인 또는 <b>그 배우자</b></p>

<개정이유> 농·어업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촌 귀농주택 취득자에 '어업인의 배우자'를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2월 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5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개정 예정)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등기·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시일</li> <li>○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 등기접수일</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재조사 관련 취득시기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li> <li>○ 지적재조사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 : <b>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b></li> </ul>

〈개정이유〉 지적재조사로 인해 공부상 면적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를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즉 기존 토지)를 취득한 날’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2월 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6 이종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개정 확정)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 양도가액 - 증여재산가액</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법인세법에 따라 <b>배당·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 양도가액 - 소득처분금액</b></li> </ul> </li> </ul>

〈개정이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그 양도대가 중 일부가 거주자의 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종합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양도가액 - 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7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개정 확정)

종전	개정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범위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10년(주식의 경우 1년) 내 양도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 ○ 증여자인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추가>	□ 적용배제 범위 확대 ○ (좌 동) ○ <b>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b>

<개정이유> 종전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다. 즉 증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았다. 그런데 '생전 증여(증여세 과세) → 증여자 사망으로 상속 개시 → 양도'의 흐름은 세무적으로 '상속(상속세 과세) → 양도'와 동일하다. 증여 당시 시가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정산과세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를 통해 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양도 시점에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8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업상속공제자산 취득가액 계산방법 규정(개정 예정)

종전	개정
<p>□ 기업상속공제적용률* 산정방법</p> <p>* 자산가액 중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로서, 기업상속공제 재산 이월과세 적용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시 활용</p> <p>○ <math>\frac{\text{기업상속공제금액}}{\text{기업상속재산가액}}</math></p>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기업상속공제자산 이월과세 취득가액 산정방법</p> <p>취득가액 = ① + ②</p> <p>① 피상속인 기준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기업상속공제적용률</p> <p>② 상속인 기준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기업상속공제적용률)</p>	<p>□ 계산방법 보완</p> <p>① 개인기업의 경우 : (현행과 같음)</p> <p>② <b>법인가업</b>의 경우 :</p> <p style="text-align: center;"><math>\frac{\text{상속개시일 현재 (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가액)}}{\text{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총자산가액}}</math></p>

<개정이유>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대상 자산에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상속공제가 적용된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2월 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9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가액 완화 및 중과 배제기간 연장(개정 예정)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및 주택의 수 계산시 제외</li> <li>○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li> <li>-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할 것</li> <li>-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일 것</li> </ul> </li> <li>- 2024.1.10.~2025.12.31. 기간 중 취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가액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억원 이하 → <b>7억원 이하</b></li> <li>- 2025.12.31. → <b>2026.12.31.</b></li> </ul> </li> </ul>

<개정이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고 주택이 수를 계산할 때에도 제외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가액의 요건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1억원 상향하였다. 한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기간을 종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1년간) 연장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이 규정은 2026년 2월 일 이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0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증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시 제외(개정 예정)

종전	개정
<p>□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증과 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저가주택* * 주택수에서도 제외</li> <li>○ 동거분양, 혼인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li> <li>○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인구감소지역주택 주택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추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1.1.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b>인구감소지역 주택*</b> * 주택수에서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li> <li>※ 단,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 광역시 구지역, 기존 주택과 동일 시·군·구 제외</li> <li>- 기준시가 :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9억원) 이하</li> </ul> </li> <li>○ 2026.1.1.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b>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b> * 주택수에서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취득 당시 인구감소관심지역</li> <li>※ 단, 광역시 구지역, 기존 주택과 동일 시·군·구 제외</li> <li>- 기준시가 :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 이하</li> </ul> </li> </ul>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과 배제주택에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1 2027년부터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국외주식 포함(개정 확정)

종전	개정
<p>□ 국외전출세 과세대상</p> <p>○ 요건 : 국외전출자(① + ②)</p> <p>①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기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상일 것</p> <p>② 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과세대상 국외전출자 국내주식의 범위</p> <p>-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및 출자지분 중 국내주식(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주식과 비상장법인 주식)*</p> <p>-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특정주식(A)*와 특정주식(B)*</p> <p>* 적용세율 :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p>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과세대상에 국외주식 포함</p> <p>○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 국외주식은 대주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p> <p>○ 과세대상 국외전출자 주식의 범위</p> <p>○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 2027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외주식* 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 적용세율 : 20%(중소기업의 주식은 10%)</p> <p style="text-align: center;">* 구체적인 국외주식의 범위는 아래 세부사항 참조</p>

\* 세부사항 : 구체적인 국외주식의 범위(개정 예정)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국외주식'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주식을 말한다.

- ㉠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의 해당 국외주식
- ㉡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국내에서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에 한한다.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으로서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가 소유한 국외주식
- ㉢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인 자가 그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국외주식



### 1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화(개정 예정)

종전	개정
<p>□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우대*</p> <p>*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후 양도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p> <p>○ 대상 :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p> <p>○ 양도차익 계산 :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구체적 계산방법 규정 없음)</p>	<p>□ 임대기간 양도차익 계산방법 추가</p> <p>○ (좌 동)</p> <p>○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 계산방법</p> $\text{양도차익} \times \left( \frac{\begin{array}{r} \text{임대 종료일} \\ \text{기준시가} \end{array} - \begin{array}{r} \text{취득시} \\ \text{기준시가} \end{array}}{\begin{array}{r} \text{양도시} \\ \text{기준시가} \end{array} - \begin{array}{r} \text{취득시} \\ \text{기준시가} \end{array}} \right)$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 명확히 규정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2월 일부부터 적용한다.

**1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철거예정 건물분 양도가액 산정방식 보완(개정 예정)**

종전	개정
<p>□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 감면</p> <p>○ 대상 :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양도한 토지</p> <p>○ 토지·건물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 계산</p> <p style="margin-left: 20px;">- 원칙 :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p> <p style="margin-left: 40px;">• 토지·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40px;">〈추가〉</p> <p style="margin-left: 40px;">〈신설〉</p>	<p>□ 양도가액 계산방법 보완</p> <p>○ (좌 동)</p> <p>○ 안분계산 방법 보완</p> <p style="margin-left: 20px;">* 현행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 준용</p> <p>- (좌 동)</p> <p style="margin-left: 20px;">• 토지·건물의 구분 가액이 안분계산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p> <p>- 예외 : 구분 가액(안분계산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으로 계산)</p> <p style="margin-left: 20px;">① 다른 법령에 따라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② 함께 취득 후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p>

<개정이유>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지원 및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2월 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5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개정 확정)

종전	개정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내국법인이 리츠에 토지·건물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납부이연 및 법인세 과세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는 회사</li> </ul> </li> <li>○ 내용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li> <li>○ 현물출자 기한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li> <li>○ 사후관리 : 다음의 경우 과세이연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이연받은 세액×주식처분 비율</li> <li>②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및 리츠가 해산한 경우 : 이연받은 세액 전액</li> <li>③ 리츠의 영업인가 취소 등 : 이연받은 세액 전액 및 이자상당액</li> </ul> </li> </ul> </li> </ul>

〈개정이유〉 부동산 개발사업 선진화 지원을 위해서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6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개정 확정)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li> <li>○ (내용) 폐업을 위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li> <li>○ 적용기한 : 2025.12.31.</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028.12.31.</li> </ul> </li> </ul>

〈개정이유〉 축산농가 업종전환 등 지원

## 17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개정 확정)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용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건물</li> <li>○ 내용 : 어업용 토지·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li> <li>○ 적용기한 : 2025.12.31.</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028.12.31.</li> </ul> </li> </ul>

<개정이유> 어업인에 대한 지원

## 18 영농자녀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개정 확정)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일정 면적 이내 농지 등*을 증여 * 농지·염전, 초지, 산림지, 어업권, 축사 및 부수토지 등</li> <li>○ 내용 : 증여세 100% 감면(5년간 1억원 한도)</li> <li>○ 적용기한 : 2025.12.31.</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2028.12.31.</li> </ul> </li> </ul>

<개정이유> 자경농민 영농 승계 지원

## 19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종전	개정
<p>□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p> <p>* 농어촌주택등(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 보유주택(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p> <p>○ 농어촌주택등, 기회발전특구, 수도권·조정대상지역 등이 아닌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지역 내 동(洞) 소재 주택</p> <p>- 단,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을 것</p> <p>- 단,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지 않을 것</p> <p>○ 적용기한 : 2025.12.31.</p>	<p>□ 요건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p> <p>○ (좌 동)</p> <p>- 단,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같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있지 않을 것</p> <p>- (좌 동)</p> <p>○ 2028.12.31.</p>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한편 2026년 1월 1일 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부

**부가가치세법**



# 1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 부가령 §8②

현행	개정안
<p>□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li> <li>○ (예외) 다음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자산관리공사</li> <li>-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li> <li>- 한국토지주택공사 등</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예외 대상 확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p>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 2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 범위 명확화 부가령 §3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항행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로 여객·화물을 수송*하는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❶ 국내 → 국외, ❷ 국외 → 국내, ❸ 국외 → 국외</li> </ul> </li> <li>○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국제 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국제운송하는 용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율 적용 범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li> </ul> </li> </ul>

<개정이유> 영세율 적용범위 명확화

## 3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면세기한 종료 및 미가공식품 등에 대한 면세 적용기한 연장 부가칙 §24, §37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가공식품(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 등)으로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는 경우 과세. 다만 '25.12.31.까지는 면세</li> <li>□ 미가공 식품(커피·코코아두는 제외)의 수입은 면세. 다만, '25.12.31.까지는 수입하는 커피·코코아두는 면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한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6. 1. 1.부터는 과세</li> </ul> </li> <li>□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7.12.31.까지는 면세</li> </ul> </li> </ul>

<개정이유>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 4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금융·보험업 수행기관 확대 부가령 §40③

현행	개정안
<p>□ 금융·보험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기관</p> <p>○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면제 대상 기관 추가</p> <p>○ (좌 동)</p> <p>○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p>

<개정이유> 부실자산 구조조정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5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령 §84②

현행	개정안																			
<p>□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p> <p>*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p> <p>○ 공제한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과세표준 (과세기간)</th> <th>기본 (‘25년말까지)</th> <th>음식점업 (‘25년말까지)</th> </tr> </thead> <tbody> <tr> <td>과세표준의 65%</td> <td>과세표준의 75%</td> </tr> <tr> <td rowspan="3">개인 사업자</td> <td>1억원이하</td> <td rowspan="2">과세표준의 65%</td> <td>과세표준의 75%</td> </tr> <tr> <td>1~2억원</td> <td>70%</td> </tr> <tr> <td>2억원초과</td> <td>55%</td> <td>60%</td> </tr> <tr> <td>법인사업자</td> <td></td> <td colspan="2">50%</td> </tr> </tbody> </table>	구분	과세표준 (과세기간)	기본 (‘25년말까지)	음식점업 (‘25년말까지)	과세표준의 65%	과세표준의 75%	개인 사업자	1억원이하	과세표준의 65%	과세표준의 75%	1~2억원	70%	2억원초과	55%	60%	법인사업자		50%		<p>□ 적용기한 연장</p> <p>○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7.12.31.까지 연장</p>
구분			과세표준 (과세기간)	기본 (‘25년말까지)	음식점업 (‘25년말까지)															
	과세표준의 65%	과세표준의 75%																		
개인 사업자	1억원이하	과세표준의 65%	과세표준의 75%																	
	1~2억원		70%																	
	2억원초과	55%	60%																	
법인사업자		50%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지원

**6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조특법 §108

현행	개정
<p>□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li> <li>○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 중고차 취득가액</li> <li>○ (공제율) 폐자원 : 3/103 중고차 : 10/110</li> <li>○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자원 : 매출액의 80% - 세금계산서 매입액</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설&gt;</p> </li> <li>○ (적용기한) '25.12.31.</li> </ul>	<p>□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중고차 : 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li> <li>※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 허용</li> <li>○ '28.12.31.</li> </ul>

<개정이유>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합리화

<적용시기>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7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조특령 §104의5

현행	개정안																				
<p>□ 전자신고 세액공제</p> <p>○ (대상) 전자신고의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p> <p>* 납세자, 세무대리인·세무법인 등</p> <p>○ 세액공제 기준금액</p> <table border="1"> <tr> <td>소득세</td> <td>2만원</td> </tr> <tr> <td>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td> <td>추가 납부·환급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td> </tr> <tr> <td>법인세</td> <td>2만원</td> </tr> <tr> <td>부가가치세</td> <td>1만원</td> </tr> <tr> <td>양도소득세(예정신고)</td> <td>2만원</td> </tr> </table>	소득세	2만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	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2만원	<p>□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p> <p>○ (좌 동)</p> <p>○ 세액공제 기준금액 인하</p> <table border="1"> <tr> <td>소득세</td> <td>1만원</td> </tr> <tr> <td>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td> <td>추가 납부·환급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td> </tr> <tr> <td>법인세</td> <td>1만원</td> </tr> <tr> <td>부가가치세</td> <td>5천원</td> </tr> <tr> <td>양도소득세(예정신고)</td> <td>(좌 동)</td> </tr> </table>	소득세	1만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	법인세	1만원	부가가치세	5천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좌 동)
소득세	2만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																				
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2만원																				
소득세	1만원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																				
법인세	1만원																				
부가가치세	5천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좌 동)																				

<개정이유> 전자신고 정착에 따른 지원 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8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부가법 §55, 부가령 §100

현행	개정
<p>□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p> <p>○ 예식장업</p> <p>○ 부동산중개업</p> <p>○ 보건업(병원, 의원 한정)</p> <p>○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가&gt;</p>	<p>□ 제출 의무 업종 추가</p> <p>○ (좌 동)</p> <p>○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p>

<개정이유> 과세기반 확충

<적용시기> '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9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부가법 §60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가공세금계산서등 발급·수취</li> <li>❷ 사업자가 아닌 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li> </ul> </li> <li>○ (세율)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세율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세율) 3 → 4%</li> </ul> </li> </ul>

<개정이유> 조세탈루 방지

<시행시기> '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 10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 부가법 §74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의무자의 자료제출 등 의무 및 이에 따른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납세보전 또는 조사</li> <li>○ (대상자) 납세의무자</li> <li>○ (의무) 장부·서류 등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li>○ (과태료) 2천만원 이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제출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의무) 장부·서류 등(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li>○ (좌 동)</li> </ul> </li> </ul>

<개정이유> 조세탈루 방지

<시행시기> '26.1.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분부터 적용

## 제4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개정 확정)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법인이 수유자 또는 특별연고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자</li> <li>①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li> <li style="text-align: center;">〈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의무자 추가</li> <li>① (좌 동)</li> <li>②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li> </ul>

〈개정이유〉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에 대해서만 지분상당액의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지분상당액의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계산방식 합리화(개정 예정)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영농의 영농상속 재산가액</li> <li>○ 농지 등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산방식 합리화</li> <li>○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li> </ul>

〈개정이유〉 개인의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을 영농에 사용한 자산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합리화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2월 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영농상속공제 영농종사기간 계산방법 합리화(개정 예정)

종전	개정
<p>□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영농기간 요건</p> <p>○ 요건 :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직전 일정기간(피상속인 8년, 상속인 2년) 계속 직접 영농(개인 영농 또는 해당 기업 경영(법인 영농))</p> <p>○ 영농기간에서 제외하는 과세기간</p> <p>-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기간에서 제외</p> <p>* 농업·어업·임업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은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가&gt;</p>	<p>□ 영농기간 계산방법 합리화</p> <p>○ (좌 동)</p> <p>- <b>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기간에서 제외</b></p> <p>* 도·소매업 : 3억, 제조업 1.5억, 서비스업 7,500만원</p> <p>** 농업·어업·임업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은 제외</p>

<개정이유> 영농종사기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을 영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2월 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4 첨단전략산업기금·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개정 예정)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li> <li>○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증기금</li> <li>- 기술보증기금</li> <li>- 신용보증재단</li> <li>- 서민금융진흥원 등</li> </ul> </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증여세 비과세 단체 추가</li> </ul> </li> </ul> <div style="margin-left: 2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망안정화기금</li> <li>- 첨단전략산업기금</li> </ul>

<개정이유>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증여받은 재산이 비과세되는 단체에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2월 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5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상장주식 저가양수·고가양도시 증여대상 제외(개정 예정)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제외 대상</li> <li>○ 전환사채 등</li> <li>○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li> <li>* 다만, 당일 종가 거래를 제외한 시간외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증여대상에 포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여규정 적용제외 대상 추가</li> </ul>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b>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것</b></li> </ul>

〈개정이유〉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것’은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여기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경쟁매매의 방법 등에 해당하는 매매가격 결정방법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중개를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자본시장법 8의2 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2월 일 이후 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6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합리화(개정 예정)

종전	개정
<p>□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차감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p> <p>* 증여이익(증여재산가액) : 초과배당금액 - 소득세</p> <p>①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 6월 1일 이후인 경우 : 실제 소득세액</p>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② ① 외의 경우 : 초과배당금액 × 14~45%*</p> <p>* 추후 실제 소득세액으로 정산</p>	<p>□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합리화</p> <p>①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b>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b> :</p> <p style="text-align: center;"><b>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b> : 실제 소득세액</p> <p>② (좌 동)</p>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실제 소득세액을 초과배당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합리화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2월 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7 재산취득 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합리화(개정 예정)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li> <li>* 재산취득 또는 재산가치 상승</li> </ul> </li> <li>○ 재산취득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내부정보 및 관련 재산 취득, 증여·차입받은 자금으로 취득</li> </ul> </li> <li>○ 재산가치 증가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 사업의 인허가</li> <li>-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li>-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li> </li></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가치 증가사유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비상장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포함 여부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주식의 <b>코넥스시장 상장</b></li> <li>-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코스피·코스닥 상장은 제외)</li> </ul> </li> </ul> </li> </ul>

〈개정이유〉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2월 일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8 유가증권이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과세대상 제외(개정 예정)**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제외 대상</li> <li>○ 경매, 파산선고, 공매, 대가 수수가 명백한 경우</li> <li>○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 종가로 거래되는 경우를 제외한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는 증여추정 적용</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외 대상 추가</li> <li>○ (좌 동)</li> <li>○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 종가 거래를 제외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증여추정 적용</li> </ul> </li> </ul>

〈개정이유〉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9 특정법인과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개정 확정)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배주주 등(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li> </ul> </li> <li>○ 증여자 :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배주주 : 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li> </ul> </li> <li>○ 증여자의 거래대상 : 특정법인</li> <li>○ 수증자 :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증여분은 증여세 과세제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여자 적용범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여자 : <b>특정법인 지배주주*</b> 및 그 특수관계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증여자에 지배주주 본인 포함</b></li> </ul> </li> </ul> </li> </ul> <div style="margin-left: 2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ul> </div>

<개정이유> 특정법인과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증여자(=특정법인에게 이익을 이전해 준 자)의 범위에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뿐만 아니라 '지배주주 본인'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에 이익이 이전된 경우, 그 이전 행위의 주체가 지배주주 본인인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를 불문하고 증여자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10 가상자산 인정시가 평가방법에서 감정가액 배제(개정 예정)

종전	개정
<p>□ 상속재산·증여재산의 시가</p> <p>○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6개월/3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 : 매매가액·감정가액 및 보상·경매·공매가액 → 시가로 인정</p> <p>- 감정가액 평가에서 제외하는 자산 : 주식·출자지분</p> <p>○ 주식·출자지분의 경우</p> <p>-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p> <p>- 비상장주식 : 매매가격 및 보상·경매·공매가액 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평균액</p> <p>○ 가상자산의 경우</p> <p>- 거래소 거래 가상자산 :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p> <p>- 그 밖의 가상자산 : 거래소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 공시된 일평균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p>	<p>□ 가상자산 인정시가 평가방법에서 감정평가 배제</p> <p>○ (좌 동)</p> <p>- 주식·출자지분 <b>가상자산 추가</b></p> <p>○ (좌 동)</p>

<개정이유> 주식 및 출자지분과 같이 가상자산도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보다 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평가방법이 상증세법에 마련된 점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의 인정시가 평가방법에서 감정가액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2월 일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1 부동산·주식 보유비율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방법 보완(개정 예정)

종전	개정
<p>□ 비상장주식 평가</p> <p>① 일반적인 경우 : MAX(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 1주당 순자산가치×80%) * ㉔ :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 3 : 2 비율로 가중평균  〈단서 신설〉</p> <p>② 부동산 과다보유(50% 이상) 법인의 경우 : MAX(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 1주당 순자산가치×80%) * ㉕ :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 2 : 3 비율로 가중평균  〈단서 신설〉</p> <p>③ 청산절차 진행 중인 법인 등*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㉖ 청산절차 진행 중 or 사업자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p> <p>㉗ 사업개시 전의 법인 등</p> <p>㉘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p> <p>㉙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가액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p> <p>㉚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p>	<p>□ 평가방법 보완</p> <p>① (좌 동)</p> <p>- 자산총액 중 주식가액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MAX(㉔, 1주당 순자산가치×100%)</p> <p>② (좌 동)</p> <p>-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MAX(㉕, 1주당 순자산가치×100%)</p> <p>③ (좌 동)</p> <p>* ㉖ (좌 동)</p> <p>㉗ (좌 동)</p> <p>㉘ &lt;삭제&gt;</p> <p>㉙ &lt;삭제&gt;</p> <p>㉚ (좌 동)</p>

<개정이유> 부동산·주식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인 경우 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보다 낮은 경우에만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를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보완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2월 #일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2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개정 확정)

종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li> <li style="padding-left: 20px;">○ 출연재산 및 그 운용소득·매각대금</li> <li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left: 40px;">〈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li> <li style="padding-left: 20px;">○ (좌 동)</li> <li style="padding-left: 40px;">- 출연재산에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대금·운용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이를 반복하여 취득한 재산 일체를 포함</li> </ul>

〈개정이유〉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부

국세기본법



# 1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국기법 §10, 국기령 §5의2

종전	개정
<p>□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등기우편</li> <li>○ (예외) 일반우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 고지세액 <b>50만원 미만</b></li> <li>- 대상 : ①~③의 납부고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li> <li>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고지서</li> <li>③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li> </ul> </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일반우편 송달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 고지세액 <b>100만원 미만</b></li> <li>- ①~④의 납부고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③ (좌 동)</li> <li>④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li> </ul> </li> </ul> </li> </ul>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 2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 국기령 86의2

종전	개정
<p>□ 전자송달 신청 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건)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li> <li>○ (효과)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송달 불필요)</li> <li>○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 중간예납세액</li> <li>-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가&gt;</p>	<p>□ 전자송달 신청간주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대상) <b>고지세액 추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li> <li>-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li> </ul> </li> </ul>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3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정비** 국기법 §47의4, 47의5 정무안

종전	개정
<p>□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제1항)</p> <p>○ 지연이자 상당액(제1호·제2호)</p> <p>1. 미납세액*×(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납부일) ×0.022% * 매 1일(日) 경과시마다</p> <p>〈신설〉</p> <p>2. 초과환급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납부일) ×0.022% * 매 1일(日) 경과시마다</p> <p>〈신설〉</p> <p>○ 체납에 대한 제재(제3호)</p> <p>- 미납세액×3%</p> <p>〈신설〉</p> <p>□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5제1항)</p> <p>1. 미납세액×3%</p> <p>2. 미납세액*×(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납부일) ×0.022% * 매 1일(日) 경과시마다</p> <p>〈신설〉</p> <p>〈신설〉</p>	<p>□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정비</p> <p>○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p> <p>1. 미납세액*×(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납부고지일)×0.022% * 매 1일(日) 경과시마다</p> <p>1의2. 미납세액*×(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0.67% * 매 1월(月) 경과시마다</p> <p>2. 초과환급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납부고지일의 전날)×0.022% * 매 1일(日) 경과시마다</p> <p>2의2. 초과환급세액*×(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0.67% * 매 1월(月) 경과시마다</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독촉장 송달비용(제4호): 「우편법 시행령」 §12에 따라 고시되는 등기우편 비용</p> <p>□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정비</p> <p>1. (현행과 같음)</p> <p>2. 미납세액*×(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납부고지일의 전날)×0.022% * 매 1일(日) 경과시마다</p> <p>3. 미납세액*×(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0.67% * 매 1월(月) 경과시마다</p> <p>4. 독촉장 송달비용: 「우편법 시행령」 §12에 따라 고시되는 등기우편 비용</p>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정비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및 납부지연가산세 세액 계산은 종전 규정 적용

**4**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 국기법 §48

종전	개정
<p>□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p> <p>○ (수정신고 요건) ❶ &amp; ❷</p> <p>    ❶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과소·초과신고</p> <p>    ❷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p> <p>○ (기한후신고 요건) ❶ &amp; ❷</p> <p>    ❶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예정·중간신고 불이행</p> <p>    ❷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p>	<p>□ 요건 명확화</p> <p>○ (좌 동)</p> <p>    ❶ (좌 동)</p> <p>    ❷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수정신고한 경우</p> <p>○ (좌 동)</p> <p>    ❶ (좌 동)</p> <p>    ❷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p>

<개정이유>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

**5**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 국기법 §59의2

종전	개정
<p>□ 국선대리인 신청인 범위</p> <p>○ 이의신청인, 심사·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등</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가&gt;</p>	<p>□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p> <p>○ (좌 동)</p> <p>○ 고충민원* 신청인</p> <p>* 심사·심판청구 등을 청구기한내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p>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6 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 국기령 §48의2②

법 개정내용(국기법 §59의2)

□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하면서  
고충민원에 대한 정의는 시행령에 위임

종전	개정
<p>□ 고충민원 정의</p> <p>○ ❶ or ❷의 청구를 기한 내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취소, 변경 등을 요청하는 민원</p> <p>❶ 경정 등의 청구(법 §45의2)</p> <p>❷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감사원법」상 감사청구, 「행정소송법」상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고충민원 제기 제외대상 규정</p> <p>○ (좌 동)</p> <p>○ ❶~❸는 고충민원 제기 불가</p> <p>❶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경우 *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감사원법」상 감사청구, 「행정소송법」상 소송</p> <p>❷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또는 벌금</p> <p>❸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p> <p>❹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완료된 사항</p> <p>❺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p>

<개정이유>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고충민원 범위 보완

<적용시기> '26.1.1.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7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 국기령 §63의12

종전	개정
<p>□ 세무조사*시 특정한 부분에 한해 조사가 가능한 경우 *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함이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거래</li> <li>○ 무자료, 위장·가공 거래 등 구체적 혐의로 긴급조사 필요</li> <li>○ 과세관청 외 기관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li> <li>○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내용 확인 필요</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추가&gt;</p>	<p>□ 부분조사 사유 추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p>○ (좌 동)</p> </div> <p>○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조사</p>

<개정이유> 정상가격 사전승인 관련 세무조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8 권리보호 심의 요청 관련 절차 신설 국기법 §81의19

종전	개정
<p>&lt;신설&gt;</p>	<p>□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관련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정요구) 심의 요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가능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li> <li>○ (지연통지) 통지기한(20일)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5일 이내 한차례 연장 가능하고, 해당 사유 등을 통지</li> </ul>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제6부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국세징수법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sup>국조법 §6②</sup>

종전	개정
<p>□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기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li> <li>○ (제출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가격 조정신고서</li> <li>- 정상가격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재부령에서 규정</li> </ul> </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정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li> <li>○ (경정 관련 자료 보완)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li> </ul> </li> </ul>	<p>□ 제출서류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상대국 수정신고 등 이중과세 발생 입증서류</li> <li>○ (좌 동)</li> </ul>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6.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2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 국조법 §41

종전	개정
<p>□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p> <p>○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p>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p> <p>○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p> <p>○ 조세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p> <p>○ 조세목적상 거주자·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 발급 대상 추가</p> <p>○ (좌 동)</p> <p>○ 수익적 소유자가 <b>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b></p> <p style="text-align: center;">*「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p> <p>○ (좌 동)</p>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발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3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 (1)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배분 국조법 §73의2 신설

종전	개정
〈신설〉	<p>□ 내국추가세의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적기업그룹의 <b>국내 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과세 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b></li> <li>○ 계산된 내국추가세액은 각 <b>국내구성기업에 배분</b>하여 과세</li> </ul> <p>□ 내국추가세액의 계산</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 내국추가세액</p> <p>= [최저한세율(15%) - 국내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p> <p>*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구성기업의 '인건비'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을 제외한 금액</p> </div> <p>□ 내국추가세액의 배분방식* 규정(① 또는 ② 중 택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구성기업에 배분된 내국추가세액은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정의</li> <li>① (법정배분)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배분방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구성기업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규모에 비례하여 배분(대통령령)</li> </ul> </li> <li>② (지정배분) 국내구성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 배분</li> </ul>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 과세 국조법 §73의2 신설

종전	개정
<p>〈신설〉</p>	<p>□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무국적구성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추가세 적용 시, 무국적구성기업 중 우리나라에서 설립·등록된 투과기업* 등의 경우 소재지국을 국내로 보아 내국추가세액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손익이 해당 기업이 아닌 지분소유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기업</li> </ul> </li> <li>○ 실효세율 및 내국추가세액은 각 기업별로 타 국내구성기업과는 별도의 단위로 계산</li> </ul>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국조법 §63·§84

종전	개정
<p>□ 국내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추가〉</p> <p>□ 추가세액배분액 신고·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추가세액배분액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으로 추가세액을 배분받은 구성기업</li> <li>- (신고기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li> </ul> </li> </ul> </li> <li>○ (납부)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li> <li>○ (분납) 2천만원 초과시 1개월 내 분납 가능</li> </ul>	<p>□ 납부세액의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내국추가세액배분액</li> </ul> <p>□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p>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내국추가세의 결정·경정·통지 및 징수 국조법 885

종전	개정
<p>□ 추가세액배분액의 결정·경정·수시부과·통지·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세액배분액 미신고시 과세당국이 세액 결정 가능</li> <li>○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을 시 과세당국이 세액 경정 가능</li> <li>○ 추가세액 포탈 우려 시 수시부과 가능</li> <li>○ 과세당국은 결정·경정시 이를 기업에 통지 필요</li> <li>○ 추가세액 미납시 과세당국은 미납분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가능</li> </ul>	<p>□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p>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내국추가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최저한세의 특례규정 국조법 §74·§75·§77·§79·§80

종전	개정
<p>□ 글로벌최저한세(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서 적용되는 특례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적용제외 특례(국조법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국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매출·순소득 합계가 일정액 미만* 일 경우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li> </ul> </li> <li>○ 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75·§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주 글로벌최저한세에서 별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단위</li> <li>① 소수지분하위그룹 또는 소수지분구성기업</li> <li>②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 그룹</li> </ul> </li> <li>○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만을 별도 단위로 계산하며, 추가세액 계산 시 다국적기업그룹의 지분 귀속분만 계산</li> <li>**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① 별도 계산, ② 투시과세처리, ③ 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li> </ul> </li> <li>○ 적용면제 특례*(국조법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전환기 적용면제, ② 일반적 적용면제</li> </ul> </li> </ul>	<p>□ 내국추가세에서도 동일한 특례 적용</p>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4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 (1) 합병 후 연결매출액 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 명확화 국조령 §101

종전	개정안
<p>□ 합병 유형별 연결매출액 기준(7.5억 유로) 판단기준</p> <p>① 그룹 간 합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각 그룹의 연결매출액 합계</li> </ul> <p>②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피인수기업)과 그룹 또는 기업(인수기업) 간 합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피인수기업의 매출액과 인수기업의 연결매출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li> </ul>	<p>□ 합병의 구체적 내용 보완</p> <p>① (좌 동)</p> <p>②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과 그룹(기업) 간 합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매출액과 그룹의 연결매출액 합계(또는 각 기업의 매출액 합계)</li> </ul>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적용

(2)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시 대상조세 배분방식 보완 국조법 §67①, 국조령§111①·②

종전	개정안
<p>□ 대상조세 배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조세와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해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li> <li>*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 및 이를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li> </ul> <p>□ 배분대상 대상조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관련한 세금</li> <li>②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li> </ol>	<p>□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구성기업 및 비구성기업*에 배분</li> <li>* 비구성기업의 범위 : 공동기업, 공동기업자회사 및 피지배외국법인 등</li> </ul> <p>□ 대상 확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좌 동)</li> <li>② 다른 구성기업 및 비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li> </ol>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6.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전환기적용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 국조령 §138①·⑥ 신설

종전	개정안																		
<p>□ 전환기 적용면제</p> <p>○ (요건) '24~'26년의 간이 실효세율이 일정률 이상</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사업연도</th> <th>간이 실효세율</th> </tr> </thead> <tbody> <tr> <td>2024년</td> <td>15%</td> </tr> <tr> <td>2025년</td> <td>16%</td> </tr> <tr> <td>2026년</td> <td>17%</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추가〉</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사업연도	간이 실효세율	2024년	15%	2025년	16%	2026년	17%	〈추가〉		<p>□ 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 규정</p> <p>○ (요건) '27년 추가</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사업연도</th> <th>간이 실효세율</th> </tr> </thead> <tbody> <tr> <td>2024년</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좌 동</td> </tr> <tr> <td>2025년</td> </tr> <tr> <td>2026년</td> </tr> <tr> <td>2027년</td> <td>17%</td> </tr> </tbody> </table> <p>○ (기한) '27.12.31. 이전 개시, '29.6.30. 이전 종료 하는 각 사업연도(1년 연장)</p> <p>□ 적용기한 규정</p> <p>○ (기한) '25.12.31. 이전 개시, '26.12.30. 이전 종료 하는 각 사업연도</p>	사업연도	간이 실효세율	2024년	좌 동	2025년	2026년	2027년	17%
사업연도	간이 실효세율																		
2024년	15%																		
2025년	16%																		
2026년	17%																		
〈추가〉																			
사업연도	간이 실효세율																		
2024년	좌 동																		
2025년																			
2026년																			
2027년	17%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합의내용('26.1.5.)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적용

### 1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 국징법 §115, 국징령 §105의2

종전	개정안
<p>□ 고액·상습체납자 감치</p> <p>○ 국세청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감치 신청 → 법원은 30일 범위 내 감치 명령</p> <p>* ① 3회 이상 &amp; 1년 경과 &amp; 2억원 이상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③ 국세정보위원회 의결</p> <p>〈단서 신설〉</p>	<p>□ 감치 면제 규정 신설</p> <p>○ (좌 동)</p> <p>- 다만, ①~④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감치 신청 제외</p> <p>① 최근 2년간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p> <p>*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 = ㉑ / (㉑ + ㉒)</p> <p>[㉑ 감치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연도 직전년도 말 당시 체납액 ㉒ 감치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 1.1.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체납액 중 납부한 금액]</p> <p>②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납부 중인 경우</p> <p>③ 감치 실익이 없는 경우</p> <p>④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p> <p>*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p>

〈개정이유〉 체납 징수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감치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마련 국징법 §11의2, 국징령 §8의2

종전	개정안
<p>〈신설〉</p>	<p>□ 체납자 실태확인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태확인)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종사자로 하여금 실태확인 실시 가능</li> <li>○ (확인범위) ①~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li> <li>②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li> <li>③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li> <li>④ ①~③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li> </ul> </li> <li>○ (성실 응답 의무) 체납자는 실태확인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li> <li>○ (실태확인종사자 의무) 실태확인종사자는 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li> </ul>

〈개정이유〉 체납 정리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실태확인 실시분부터 적용

(6)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국징령 §105

종전	개정안
<p>□ 명단공개 제외 대상</p> <p>①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납부비율) B / (A +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li> <li>▪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li> </ul> <p>②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납부 중인 경우</p> <p>③ 명단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p> <p>④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p>	<p>□ 제외 요건 완화</p> <p>①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1.부터 국세 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금액</li> </ul> <p>②~④ (좌 동)</p>

<개정이유> 국세 징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 2026 개정세법

---

발행일	2026년 2월 13일 8판 1쇄
초판발행일	2019년 1월 25일
편저자	이철재, 정정운, 이승철, 유은종, 정우승, 박지섭
발행인	박정화
등록	제2015-000008호
발행처	용빈출판사
주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전화번호	02-736-7701
FAX	02-725-1907
ISBN	979-11-86964-74-3 (13320)
가격	7,000원

---

\* 저자와의 협의 하에 인지를 생략합니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캔·복사·공유·매매 등의 일체 행위를 불허합니다.

\* 본 도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모든 내용은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무단전재와 무단복제 시 저작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교환 가능합니다.